

인권정보자료실
SAe1.39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세미나 자료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세미나
자료

인권정보자료실
SAe1.39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세미나 자료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저장)

I. 국가의 폭력과 헌법에서의 평화주의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태도, 군사 동맹 및 계엄이나 비상조치 등 대내외 군사활동을 주요 근거로 판별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에서 좁은 의미의 평화주의, 즉 국가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평화주의 문제를 다루고, 보다 확대된 의미로서의 평화, 즉 정의 구현과 관련된 헌법상의 평화주의 문제로서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 문제를 고찰한다. 이 글은 대내외적인 군사활동에 초점을 두는 평화주의 논의는 협소하며 평화주의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헌법에 수용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주의 헌법으로의 길, 평화주의 국가로서의 길이라고 제안한다. 냉전시대의 산물이 국가안전보장에 협소한 이해는 평화주의 헌법에 중대한 장애물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각도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국가의 정체성이 동맹이나 특정 국제체제 위치에 근거하지 않고 '인권과 평화'라는 초국적 외연을 가지는 고도의 민주주의 가치로 재규정되는 과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좁은 의미의 평화와 관련된 다음 조항을 두고 있다.

- (전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5조 1-2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II. 평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1970년대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국제인권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는 이른바 평화-인권-개발(발전)의 삼각주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동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서방진영은 자유권적 인권을 핵심 의제로 삼는데 동의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평화 문제를 그리고 이른바 남반부 개도국들은 개발(발전)이 핵심 의제라고 주장했다.

공동체가 임의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를 권리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인권의 접근이기 때문에 평화-인권-개발(발전)이 삼각주체에 관한 논쟁은 자연스럽게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¹⁾와 평화권 right to peace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가 되는 정신으로서 "세계인권선언(1948)은 전문(前文)에서는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바람직한 국제질서가 인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화의 권리와 관련하여 1984년 유엔 총회는 서방을 제외한 국가들의 주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유엔총회 결의 39/11, 1984년 11월 12일 채택). 이 선언은 전쟁이 없는 삶이 모든 나라의 물질적 안녕과 발전, 진보, 권리와 자유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의 유지가 각국의 신성한 의무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발전권 선언은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대훈, "발전의 권리와 개발",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 1998 참조.

1. 지구상의 인민이 신성한 평화의 권리를 가지며,
2. 인민들의 평화의 권리와 그 이행은 각국의 근본적인 의무이다.

유엔 평화권 선언에서 평화권은 자결권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이 집단적 권리로 제시되었으며, 개개인의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평화권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평화권 선언에는 심지어 전통적인 주제인 '국제관계 무력사용의 금지'라는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냉전시대 체제 경쟁에 기인하는 한계로 보이며, 개개인의 기본권으로서 평화를 향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숙제로 남게 되었다.

평화와 인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에는 세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하나는 인권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접근이며, 두 번째는 인권을 평화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보는 것이며, 세 번째는 평화를 인권의 전제조건을 보는 것이다.²⁾

첫 번째 접근을 대표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유엔헌장 55조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가 국가간에 호혜 평화 관계에 필수적인 안정과 복리의 조건을 형성하는데 관건'이라고 명시적 규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이 유럽안보협력기구와 헬싱키협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는 인권이 국경을 넘는 보편적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한 국가의 타국의 인권에 대해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국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봉하는 사회구성원인 다수인 사회에서조차 왜곡된 정보나 정치조작 또는 역사적인 편견 또는 국익론이나 국가안보론에 설득당해 타국에 대한 부정의한 전쟁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인권보장을 평화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접근은 주로 요한 갈통의 구조적 폭력-적극적 평화의 접근에 의한 것으로 인권보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와 안전보장의 총체를 평화로 설정한다. 국제기구로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하고 있는 평화에 관한 입장이 이에 가까우며, 이러한 경우 인권보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평화는 인류가 지향하는 선한 가치의 총합으로서 주로 설정된다. 인간안보론은 개인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총체적 평화론의 또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선한 가치의 총합으로의 개념 또는 접근이 정책 입안의 현실적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인간안보의 접근에서와 같이 아직 의문이다.

인권보장의 전제조건으로서 평화를 설정하는 접근은 우선 국제인도주의법에서 그

2) Dimitrijevic, Vojin, "Human Rights and Peace", in Symonides, Janusz (ed), *Human Rights: New Dimensions and Challenges*, Ashgate/UNESCO, 1998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법은 전쟁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전쟁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에 전제가 되는 관습적인 이해에는 평화의 부재 즉 전쟁/무력갈등이 인권 향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자명한 이해가 깔려있다. 국제인도주의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권보호의 목적이 싸우는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전쟁 개시의 조건과 정당한 전쟁 수행의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싸우는 상대, 즉 적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은 전쟁중에도,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나 개인이 침해할 수 없는 절대불가침의 영역을 설정한다. 비상 상황에 의해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일부 제약하는 경우에도 이 제약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 2항은 생명권, 신체안전권(고문과 가혹행위의 금지), 노예제의 금지, 채무에 의한 억류, 형법정주의 등의 권리를 절대불가침의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비상상황이라도 국가와 개인이 침해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의 영역이 존재한다는데 국제사회가 합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할 수 있는 절대불가침의 '중대한 인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접근도 약점이 있는바 최근 각국의 반테러법의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무능한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적 히스테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며 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진행된 인권으로서의 평화를 정립하고자 했던 노력을 살펴보면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1990년대에 아시아 전역의 약 150개의 비정부기구들이 참여한 수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아시아 인권헌장 초안이 작성되었고,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협의를 거쳐 1998년 5월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초청으로 부탄, 홍콩, 인도,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국 광주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을 선언하였다. 아시아 인권헌장에 담긴 평화권 조항을 좀 길지만 인용해 본다.

평화권

41.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진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도 안 된다. 아시아 민중들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커다란 곤란과 비극을 체험하고 있다. 전쟁과 내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훼손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지

방 내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전쟁과 내전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삶 혹은 평화적 생활을 갈구하는 그 어떤 희망도 거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심하게 군사화되어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나 군부가 가하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공포로부터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2. 국가는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진다. 이 책무는 폭력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법률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3. 평화롭게 살 권리가 보장되려면,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들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만큼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에 기대지 않고 사회 속에 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44. 파시스트의 침략과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의 보전과 강대국의 내정 불간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당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외세의 강점 위협에 대항하여 주권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 때문에 개인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외자 유치가 인권 탄압의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개인적 안전을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책임을 질 때만 보증된다.

45.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전쟁과 내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외국 국가들은 아시아의 각종 집단들을 대리자로 내세워 전쟁을 부추겨왔고, 이들 내전에 개입된 집단과 정부에게 무기를 공급하였으며 이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막대한 공공자금을 무기구입에 유용한 것이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흔히 외세의)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 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평화권을 1항 평화적 생존권에 기초해 규정하면서도 평화

의 조건을 무력분쟁에 국한하지 않고 평화의 정의 구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대외 무력행사의 제한의 국한하지 않고 국가에 의한 폭력 일반을 제약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인권의 총체적인 보장이 평화의 구성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국제질서의 정의로운 개편이 일국적인 평화구현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 등이다. 즉 아시아인권헌장에서의 평화권은 일국과 국제질서를 관통하는 정의구현의 상을 권리로서 표현했다고 보인다.

III.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과 평화의 권리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를 대외적 평화, 즉 전쟁과 대외 군사활동 등으로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은 협소하다. 평화주의의 핵심은 폭력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인데, 폭력과 공포가 주로 외부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현대사에 반복되었듯이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평화주의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무력/폭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 범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국가의 무력/폭력 사용에 국한해서 평화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앞에서 논의할 중대한 폭력에 대한 보편적 규범을 수립해온 국제적인 노력과 상치된다. 무력/폭력의 사용이 외부이던 내부이던, 그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의무과 권리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를 근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폭력 이전 이후에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전쟁 수행상의 부당한 폭력과 국가의 (국내적) 인권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공히 그 책임을 묻는 인권규범으로서 유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협약 (1968)', 유엔 인권소위 '중대한 인권침해와 중대한 인도주의법 위반의 피해자 보상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특별보고관 Theo van Boven, 1995)' 등이 있으며,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규정한 인권규범으로서 유엔인권소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 배상, 보상, 재할에 관한 연구 (특별보고관 Theo van Boven, 1993)', 유엔인권위 '불처벌 척결을 위한 보강 원칙 (독립적 전문가 Diane Orentlicher, 2005)', 유엔인권소위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 (Louis Joinet, 1997)' 등이 있다. 이러한 인권규범에는 공통의 기반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의 책임 추궁에 국경,

즉 내부/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엔 시효부적용협약은 먼저 "범행의 시점을 묻지 않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1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쟁범죄는 다시 뉘른베르그 헌장에서 정의되고 유엔 총회의 결의 3(1)호(1946.2.13)와 95(I)호(1946.12.11)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한정되고 특히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5년 8월 8일의 제네바협약들에 열거된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도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제1조 (a)). 이 협약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전시 또는 평시에 저질러졌던 간에 1945년 8월 8일의 뉘른베르그 국제군사법정헌장에서 정의되고 유엔 총회의 결의 3(1)호(1946.2.13)와 95(I)호(1946.12.11)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정의된다(제1조 (b)). 이 협약은 또한 "무력공격 또는 점령에 의한 축출(eviction), 인종격리(apartheid) 정책으로 야기된 비인간적 행위와 집단학살범죄"에도 적용된다(같은 조문). 이 협약의 규정은 범죄의 완성 정도를 묻지 않고 정범이나 종범으로서 이러한 범죄행위의 실행에 가담하거나 직접적으로 선동 또는 모의한 국가당국자와 사인과 이러한 범행을 용인한 국가당국자에게 적용된다(제2조). 유엔협약은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의 "소추와 처벌에 대해 공소시효 또는 다른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의 폐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각각의 헌법절차에 따라 채택"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한다(제4조).³⁾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는 일반적으로나, 국제상설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에 의하면 반인도적 범죄는 민간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으로써 자행된 다음 열거된 행위를 말한다.⁴⁾

- (a) 살인(murder); (b) 말살(extermiation); (c) 노예화(enslavement); (d) 강제이주(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e) 국제법의 기본적 원칙에 위반되는 구금이나 심각한 신체의 자유박탈(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f) 고문(torture); (g) 강간, 성노예화, 강제된 매춘 및 임신, 단종, 혹은 기타 이와 비견되는 성적 폭력(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3) 이상, 조시현,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시효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1999년 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4) 박찬은, "'반인도적 범죄'의 국내적 수용--국내법의 문제와 수용방안을 중심으로", 출처 미확인

gravity); (h)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혹은 성차별에 입각한 어느 특정 그룹에 대한 박해(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 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i) 강제된 납치행위(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j) 아파르트헤이트; (k) 기타 의도적으로 신체에 심각한 고통을 주기 위해 자행되는 비인도적 행위(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to body....)

동 규정은 재판소의 관장범죄로 대량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행위(aggression)와 함께 가장 중요한 관장범죄행위로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국제규범으로서 가장 엄격하게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인권'의 영역, 즉 인류사회가 제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가장 극심한 폭력의 영역을 규정하는 노력의 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행위, 반인도적 범죄의 범죄상의 등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IV.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이해

국가안보는 근현대 국제체제를 떠받치는 국가주권 원리의 핵심적인 정책담론이다. 국가의 최고 목표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정책 분야가 다른 정책 분야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안보는 또 국익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주장된다. 파병과 관련된 국익론, 유신시대 '안정위의 성장론' 등이 모두 같은 종류이다. 국가안보를 인간 안보와 대치시켜 진정한 안보가 존재한다거나, '정권안보로 전락한 국가안보'를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국가안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안보' 담론의 틀 안에서 전개되는 부분적인 비판이다. 평화운동을 세계 체제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근대 세계체제와 안보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안보'라는 언어는 근대 세계사에서 서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퍼져나간 개념으로, 사회적 자발적 합의가 불가능한 "모호한 상징"이며 좋게 평가할 때 "저개발된 개념"에 불과하며, 최대한 현실에 적용해도 "안보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국가안보정책은 그 명칭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1947년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는 전후 세계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이 외교정책의 중심에 안보 사상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배경은 냉전의 총체적 진영 대결 구도하에서 전통적인 일국적 국가방위(국방 national

defence)의 접근으로서 대사회주의권 대결을 구사하려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충분한 국내적 동의를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다.⁵⁾ 즉 해외에서의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보호가 곧 국익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국가방위라는 소극적 정책 태도를 대신하는 공세적인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안보론이 당시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중추적인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냉전의 총체적 대결 구도가 요구하는 증대된 국방비, 사회안정에 대한 압력, 적극적이며 확대된 대외 정책, 핵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확대된 군사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의 거부반응을 극복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안보 패러다임은 보통 어떤 행위를 '적대 행위'로, 어떤 수준의 행위를 '위협'으로, 또 어떤 국가를 '적국'으로 규정하는 일상적인 해석과 인식의 영역을 포함한다. 보통 안보 위협이라고 지칭되는 현상에는 물리적 군사력이라는 실재와 그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정보와 추측, 해석과 편견, 정치적 의지와 여론이라는 '관념적' 실재가 함께 들어있다. 때문에 안보 문제는 물리적 실재만 다루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해석과 편견 및 추측이 난무하는 '관념'의 영역을 아울러 상대해야 한다. 관념과 결합되지 않은 물리적 군사력은 그 자체로는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안보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는 특정한 정치적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자는 자기의 관념과 의지, 정체성을 재형성 또는 강화하기 때문에 '안보' 언술은 정치적 행위자의 구성적 행위이다.

'안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적 해석과 언술행동은 다른 정치적 언행과 다르게 '죽음의 공포'를 제기하는 특별한 행위이다. '안보'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가의 죽음 및 국가구성원의 죽음에 이른다는 '협박'을 수반하는 언행이라는 면에서 다른 '국익' 언술과 다르다. 그 목적은 통상적인 정치 수단 이외에 특별한, 예외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대중에게 호소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안보의 언어로 자행되는 정치행위는 비정상성을 요구한다. '죽음의 공포'를 전제로 한 이 비정상성은 대응 수단으로 폭력(군사행동 또는 초법적 안보기구의 활동)을 정당화한다.

즉 안보 정치는 비정상적 정치의 정당성 획득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와 일상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폭력의 증대를 가져온다. 죽음의 공포라는 장막을 통해 안보 행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이런 면에서 '안보의 언어'는 발화자의 안보를 지켜준다.

5) Waever, Ole, *Concepts of Security*,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openhagen, 1997.

냉전의 광기가 잦아들면서 극단적인 '공포의 언어'로서 안보론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냉전이후 안보론은 보다 낮은 수준의 공포를 다루는 '위협의 언어'로 변화하는데 이로부터 '안보개념의 확산' 문제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안보사항으로 군사력, 세력균형, 신기술의 군사적 영향, 자원 경쟁, 영토 보호 등을 취급하며 신(비전통적) 안보사항으로 경제위기, 환경파괴, 인권, 정치안정, 국제범죄 등이 거론된다.

보통 폭력적 수단을 호소하지는 않지만, '경제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 '테러리즘'을 (때로는 마치 국가안보론에 대한 대안인 듯) 제기하는 것은 그 동기가 역시 해당 문제가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므로 특단의 조치를 요한다고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같은 종류의 '강조 어법'이다. 그러나 안보문제의 확대, 정확하게는 '안보언어'의 확대는 원하던 바와는 반대된 결과를 얻게 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특정 이익, 특정 주제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공포감을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아무 주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통 인간안보를 주제로 하는 논의에서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인간 '안보' 항목을 몇 가지 언급해보면, 폭력으로부터의 개인적인 안전, 생활필수품의 확보, 범죄와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 정치적 부패로부터의 안전, 인권보장, 젠더 차별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의 권리 보장, 경제개발, 민주주의 신장, 자연환경 남용 방지, 지속가능한 환경...등이 있었다. 외교정책에 인간안보 문제에 적극 수용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인간안보를 "폭력적 위협 및 비폭력적 위협으로부터의 인민의 안전"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이슈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무의미한 결론에 도달한다. 낮은 수준의 위협을 강조하는 확대된 안보담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은, 최근 '테러리즘'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적 과잉안보와 전쟁도발을 정당화하는 부시 행정부의 노선에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보인다. 즉 안보의 정치에서는 죽음의 협박이 다른 모든 협박을 압도하는 협박의 제왕인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안보론이 대두될 수 있으나, 이러한 안보 인플레이션 보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다수의 다층적인 '위험도(risk)'를 인정하고 위기관리 정책 차원에서 정상적인 정치적 접근을 함으로서, 안보담론이 근거하고 있는 '공포의 장막'을 걷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를 우리는 (이른바 안보전문성이 보통 군사전문성, 국제정치 전문성과 상통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총체적으로 '안보문제의 사회화' 또는 '안보문제의 탈안보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냉전 담론에 대한 대항으로서 '죽음'의 정치로부터 '상생의 정치'로의 전환으로도 담론화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방면에서 평화운동이 물리적 군사력의 문제와, 안보위협의 해석과 선동의 문제, '적'과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탈안보적 행위자 형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전쟁이나 갈등을 겪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위협'의 판타지가 깊게 각인되어 그 인식이 강고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위협의 정치를 통해 기반을 다진 정체세력들 역시 강고하기 때문에, 즉 이른바 안보 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안보의 사회화/탈안보화 과정은 오랜 과정을 거쳐야 형성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V. 소결

이상에서 우리는 국제 시민사회의 공동노력과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의 발전 과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폭력에 대한 위대한 거부'를 발견하게 된다. 즉 국가를 포함하여 어떠한 행위자도 대량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행위(aggression)와 함께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공소시효배제나 사면 또는 망각을 통해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규범으로서 가장 엄격하게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인권'의 영역, 즉 인류사회가 제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가장 극심한 폭력의 영역을 규정하는 노력의 한 분수령이다. 평화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폭력의 여러 모습 즉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행위, 반인도적 범죄의 범죄상의 등가적 위치이다. 이는 평화를 외부에서의 무력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다.

헌법상의 평화주의를 인권으로서 접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폭력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국가가 전통적으로 부여했던 의무를 벗어던지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군사력을 포함해서 폭력의 행사에는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국가가 그러한 폭력행위를 수행했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으며,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 규정된 인권침해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주목하여 즉 인권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정의구현의 출발점으로 하는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국가의 인권 피해자 구제 의무는 근대 인권의 핵심이다.

피해자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적 접근의 효과는 나아가 피해를 직접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가 자신의 속한 국가가 어떠한 반인권적 행위를 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 등으로 통하여 개혁됨으로서 온전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보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추후,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행위, 반인도적 범죄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적을 막록하고 피해자의 구제권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자유로운 동의에 기초한 것인지 인지된 공익성에 기초한 것인지 그러한 기초를 요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의무가 보편적인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규범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책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의무는 동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평화의 권리와 관련된 전쟁행위, 군사활동, 기타 국가의 불법적 폭력행위 (쿠데타시의 병력동원 명령에 대한 복종 등)와 반인도적 범죄 (고문, 납치 등) 등이다. 이러한 영역은 통상 국가안보 활동으로 인식되는 영역과 반인도적 범죄의 영역이다. 반인도적 범죄와 달리 국가안보 영역의 활동은 국가 행위중에서 보편적 인권규범과 충돌할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당화되어온 영역으로 문제가 더 크다. 이러한 면에서 이 영역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국제형사재판의 관장범죄와 관련된 논란이 이는 영역에서는 자동적인 준수(compliance)를 적용할 수 없으며, 국가 정책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한 연후의 동의(consent by knowing)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안전 문제에 대한 해석의 복수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대두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지킬 필요하다. 정책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경우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간의 경쟁을 추구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안보 문제의 경우 이는 적, 위협, 안보이슈, 관련된 군사·외교 활동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해석과 판단의 복수성을 열어 놓는다는 의미이다.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복수성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관건이다. 월남전 파병과 이라크파병의 경우, 왜곡된 정보와 알권리의 침해를 통해서 즉 일종의 여론조작을 통해, 국방과 관련이 없는 불법전쟁에 시민들의 인지된 동의 없이 생명을 건 의무를 병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정당성이 논란이 되는 군사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해석

과 판단의 복수성을 충분히 열어놓지 않은 데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추후 전쟁범죄 또는 그에 공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91조에 같이 국가안전보장 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평화주의 헌법이라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과 인지한 연후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다수의 인권체계와 우리 헌법에서 평화는 주로 '국가간의 전쟁이나 국가 내에서의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평화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조건 혹은 질서로서 막연히 이해되고 있을 뿐 독자적 권리로서 승인되지 못하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국제기구에서 '평화권'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일정한 합의를 구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보편적 승인과 적용의 지위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결과 인권체계 내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다양한 폭력의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탈냉전 이후 오히려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전쟁이나 무력분쟁들이 인민들을 인권에 대한 총체적 부정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과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을 계기로 하여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전쟁'이 감행됨으로써 인권과 평화의 충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미국의 전쟁 등을 고려할 때, 전쟁/무력사용은 '더 이상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정치의 종말'인 만큼, 전쟁/무력사용/국가의 중대한 폭력에 대하여 인권론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인권과 평화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화에 대한 권리의 독자적 개념화와 인권체계와 법리체계로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 이대훈, "발전의 권리와 개발",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 1998
- Kritz, Neil J. (ed),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Former Regimes*, Vol. I,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5
- Levi, Margaret, *Consent, Dissent, and Patriot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Rosenau, James N., "Citizenship in a changing global order", in Rosenau, J.N. and Czempiel E. (ed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Symonides, Janusz (ed), Human Rights: New Dimensions and Challenges, Ashgate/UNESCO, 1998

Waever, Ole, Concepts of Security,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openhagen, 1997

2004년 4월 20일

proposed doctrine of preemption.

Therefore, the doctrine of preemption must be discarded. It may well make the world a more dangerous place. Moreover, the war for "regime change" is not to be supported. Waging a war to get rid of a foreign leader, even a dangerous one, is not at all consistent with just war principles. Equally, the insistence on the revolt for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made by some obstinate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can not be justified.

In conclusion, there must be verifiable assurances that prevent North Korea from becoming a threatening nuclear power, with a firm commitment that the U. S. will not attack a peaceful North Korea.

In addition, North Korea should, on the other side, come to the awareness that the Korean War it waged in 1950 can not be justified either. A socialist revolutionary war is in no way consistent with the just war principles.

Key Words: preemption, just war theory, pacifism, Agreed Framewor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프랑스인권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원리, 서경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광주대 교수, 헌법

I. 들어가는 말

정전 50주년을 맞아 2003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제주평화회의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대안 찾기에 골몰했다. 두 번째 기초발제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평화의제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담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평화주의 그 자체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은 매우 미진하다. 우리 헌법이 헌법에 평화주의를 명시하는 현대헌법의 추세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일과 관련하여 독특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다.

독일이나 특히 일본의 경우와 같이 헌법상의 평화주의를 실천적 차별로 활용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지라도, 세계평화 구축보다 구체적인 한반도평화 구축에 관하여 헌법상의 평화주의가, 지닌 실천적 의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해석자들이 평화주의를 헌법원리의 하나로 격상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포로 다루는 내용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주류헌법학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규범적 재단을 삼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범규범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안이거나 국제정치 혹은 국제법에서나 다를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대

* 심사위원: 박병설, 송기춘, 한상희

1) 이김현숙, 「한반도평화운동의 지평」, 한국인권재단 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대안담론과 대안정책」, 2003 제주평화회의, 31쪽 이하.

림공간에서 아주 편리하게 생존을 도모했다는 점이 옳을지도 모른다.
헌법해석자들이 군비축소와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당위적 요청을 모른
척하는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국가헌법의 원형이 형성되던 근대국가 초기
에, 부르주아지와 다른 헌법상상을 제시했던 민중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
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군사문제를 포함하여 평화에 대한 그
들의 태도는 오늘날 평화주의를 보다 전향적으로 충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보편적 개념으로서 평화에 대한 논의를 한반도현실에서 실천적
으로 담보하는 물적 토대는 이미 상당히 갖춰져 있다. 7·4 남북공동성명
을 위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에 합의된 주요 문서들이 그것이
다. 평화주의를 남북공동체의 공통규범으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학의 중요
한 과제이다. 평화국가원리와 그 특수한 발전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과제는 이 글의 두 축으로서, 헌법상의 평화주의에 관한 이론적 충진이
글의 목적이다.

II. 평화문제에 관한 규범사적 전개

평화에 대한 인식이 전쟁 및 군사문제(군의 통제 및 규율)로 국한되어
있긴 하나 근대입헌주의헌법은 평화문제를 스스로의 규율대상으로 삼았
다. 즉, 군대에 관한 기본문제는 법률만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하고 헌법
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헌법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헌법의 규율대상을 구
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의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의회중심주
의) 규정하고 있었다.²⁾

2) 杉原泰雄 이경주 역, 『헌법의 역사』, 이문과실천 1999, 56쪽 이하.
3) 예컨대 1788년의 미합중국 헌법은, 전쟁을 선언하는 것(제2조 제8절 제11항), 육해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제2조 제8절 제12, 13항), 육해군의 통수와 규율에 관한 규칙제정 등을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제2조 제8절 제14항). 1791년 프랑스헌법도 국왕의 통수권을 인정하면서도, 군정사함은 의회의 배타적인 권한으로 규정한다(제3편 제3장 제1절 제8호). 전쟁선포는 국

민중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2차 대전 이후 현대시민헌법에는
평화에 관한 규정들이 점차 시민권을 얻었다. 여기에는 1차 대전 이전의
전통국체법이 국가의 무력사용권을 당연시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도 한
몫을 했다. 예컨대 1899년과 1907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이른바 정전논리(正戰, just war doctrine)
조차 담지 않은 채 무력에의 호소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다.⁷⁾ 국제연맹
규약제12조이 전쟁을 규율하는 방편으로 고과 전쟁개시 전 냉각기간을
두도록 한 것 또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3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침략전쟁을 국제범죄로 간주하고
1927년의 침략전쟁선언(Declaration on Aggressive Wars)이 문서화된 것
은 진전이었다. 다음 해의 부전조약(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에서 계약국 상호간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이 포기되었고, 제2차
대전 후 동경 및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헌장은 침략전쟁의 개시뿐만
아니라 그 준비행위 또한 국제법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았다.⁸⁾

국제연합이 결성된 이후, 유엔의 강제행동독점원칙은 무력의 위협과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키는 틀을 형성하고 있다(유엔헌장 제51조).
유엔의 강제행동독점의 예외는, 안보리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
시적으로만 인정되는 자위권의 행사와,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지역적 협
정이나 지역적 기구의 강제행동 단 두 경우뿐이다. 무력부구는 부인되며,
자위권의 자의적 확대에 불과한 이른바 '예방적 자위권'은 허용되지 않는
다.⁹⁾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다.¹⁰⁾ 유엔안보리의 허가 없이 행하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의 위협

제2조 국민위병 이외의 어떠한 병력도 파리 내에 창설하거나 도입해서는 안되
다. 제3조 모든 건강한 시민은 국민위병을 구성한다. 위의 책, 145쪽.
7)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3, 206쪽.
8) 위의 책, 208-9쪽.
9) 위의 책, 901-3쪽.
10) 1985년 12월 비엔나와 로마공항에서의 테러를 이유로 이듬해 4월 레이건이 리
비아를 폭격한 것과, 조지 부시 전대통령에 대한 암살시도를 구실로 한 1993

거의 같은 시기에, 부르주아지가 군주의 지지기반인 군대라는 물리적
을 자신들의 기반인 의회의 관장 하에 두는 것에 만족했던 것과는 달리,
당시의 민중계급과 이들의 지도자들은 군대와 전쟁문제에 대해 훨씬 엄
격한 태도를 보였다. 1792년 5월에 제시되었던 샹폴로트의 헌법사상은,
전쟁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면서 전쟁도발자에 대해 매우 엄격했
다.⁴⁾ 몇 해 뒤 '바뵈프의 음모'에서는 무력이 계급지배의 수단이 될 가능
성을 차단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었다.⁵⁾ 군축과 평화문제에 대한 한층 진
진된 태도는 무엇보다도 1871년 파리코뎀이 제시했다. 마침내 발전한 노동
자계급의 권력체인 파리코뎀은, 인민주권원리에 입각하여 군대와 경찰을
해체 또는 재편하는 등 군사소국주의를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해칠
위험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상비군을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⁶⁾

왕의 제인에 기초하되 의회의 법률로 해야 하고(동 제2조 제1항), 군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국왕은 지체없이 임명부에 통지하되, 임명부가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경우 국왕은 모든 적대 행동을 정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동조 제2, 3항). 전쟁 중 의회는 평화를 강구할 것을 국왕에
게 요구할 수 있고, 국왕에게 그 요구에 응할 것을 의무지우거나(동조 제5항)
또는 평화조약·동맹조약에 비준하는 것을 의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동 제3조).
4) 1792년 5월 샹폴로트의 헌법구상인 "사회상태에서의 인간 권리의 연속한 선
안"은, 전쟁이 군주, 전제군주, 지배자의 지위에 있는 야심가들에 의해 일어나
며 그 자체 인류에 대한 죄로 본다(제3조). '군대와 무력이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나라는 압제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인민이 봉기
하는 것은 인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제22조). 杉原泰雄 앞의 책, 105
-106쪽.

5) 1790년 5월의 바뵈프의 음모(P. M. Buonarroti의 "이른바 바뵈프의 평등을 위
한 음모" 1828년 저서 중)에 나타난 그들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무기를 일부
유권자에 맡기면 군대가 전체정치 또는 자유를 부정하는 정치의 수단이 되
로, 무기를 주려거든 모든 유권자에게 주어서 모두가 조국을 방위하도록 해야
한다.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은 유권자가 임명하고, 군대 내의 영속적인 계급을
폐지하고, 문민통제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무 때나 무력에 호
소해서는 안되며, 자유가 위협되는 경우에만 무력이 유효하고 정당할 뿐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전쟁이라도 이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전쟁에 이긴 자
에게도 죄악의 근원이 된다', '야탈심은 정부유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와 무관한
것이다'. 위의 책, 113쪽.
6) 그 해 3월 29일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 제2조 징병을 하지 않는다.

또는 사용을 동반하는 '인도적 간섭'은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으로 이루어
금지된다. 다른 나라의 억압적인 정권을 전복하고 민주적인 정부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무력으로 개입하는 이른바 '민주적 간섭'의 논리도 국제법
상 결코 승인될 수 없다.¹¹⁾ 특히 1974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침
략에 대한 정의'는 국제평화를 향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국제법의 진전에 발맞추어 침략전쟁 포기와 국제법존
중주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규정, 나아가 평화를 위해 주권을
스스로 일부 제한하는 헌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권적 측면에서 양심
적 반전주의자의 보호나 평화적 생존권이 부분적이거나 그 근거를 확보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사회주의국가헌법이나 자본주의국가헌법을
마른하고 자위전쟁을 포기하는 헌법은 거의 없고 군축에 관해 규율하는
헌법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2차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전승국의 압력에 의해 제정되었기는 하지만 독일기본법과 일본헌법에 들
어있는 평화에 관한 규정은 현대시민헌법의 평화주의에 관한 선도적 의
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독일기본법은 양심상 징총기부권(제4조 제3항)과 대체역무부과(제12a조
제2항)에 관해 규정하는 외에, 국제평화를 위해 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제24조 제1항과 제2항),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법률에 우선하는 규범
으로서 연방법의 구성부분임을 선언한다. (제25조) 그러나 독일기본법이

년 6월의 콜린턴의 대이라크 미사일공격, 그리고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대사관
에 대한 공격에 보복하기 위한, 수단의 제약공장과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1998
년의 폭격이 그 전형적인 예다. 다만 2001년의 9·11테러는 자위권의 행사를
둘러싸고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가 9월 28일 결
의 1373을 통해 헌장 제7장의 자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고 해도, 이 결의
가 피해 국가들에게 무력사용을 허가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테러집단
의 무력공격을 그 비호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인 물음에 아무런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한 것은 위의 책,
905쪽 이하 참조.

11) 민주적 간섭의 논리는 1989년 12월 파나마에 대한 미국의 무력간섭의 구실이
였고, 2003년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에 대한 미국 등의 침략도 부분적으로는
이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평화에 대한 진전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은 제26조에서 가장 뚜렷하다¹²⁾: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시키기에 적합하고 교란할 의도로 행하는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제1항).¹³⁾ 전쟁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헌법정부의 허가

를 얻어야만 제조, 수송, 거래될 수 있다(제2항). 독일기본법보다 더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이다¹⁴⁾: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주의를 성실히 회고하고,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제9조 제1항). 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戰力)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제9조 제2항). 일본평화주의의 요체는 전쟁포기 및 교전권의 부인, 모든 전력의 비보유, 평화적 생존권의 보장이다.¹⁵⁾

III. 헌법학계의 논의상황과 문제점

1. 헌법의 규정과 해석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주의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의

12) 본기본법의 평화규정에 대해서는 K. Doehring, "§178 Das Friedensgebot des Grundgesetzes", in: J. Isensee u. P. Kirchhoff(H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2, 668쪽 이하.
13) 이 조항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침략전쟁준비의 금지가 개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는 침략전쟁 준비가 국내법상 형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K. Doehring, 위의 글, 32번호 30.
14)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주의론에 대한 진보적 관점에서의 논평으로 和田進, 「平和主義論の課題」, 『法の科學』 第27号, 1998, 88쪽 이하.
15) 麻生多聞, 「平和の人權論的構成に関する考察」, 『早稲田大學大學院法學研究集』 第94号, 2000, 26쪽.

이 있다. 두 번째로 국제법존중주의와 관련하여, 일원론과 국내법우위론이 거의 통설이 되고 있다.¹⁸⁾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효력이 대체로 국내법률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¹⁹⁾ 헌법재판소의 사법부는 우리가 가입한 유엔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조차 그 국내법적 효력을 극히 소극적으로 이해하는데 이에 대해 학설에서의 문제제기는 드물다. 세 번째로,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에 관하여 다수의 견해는 상호주의로 이해할 뿐 절대적인 하한선을 포함한 평등주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²⁰⁾ 헌법상 평화주의에 관해 가장 많은 양을 맡아하는 것은 네 번째인 평화적 통일 원칙이다. 헌법규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말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북한체제가 기초하는 원리를 배척하면서, 남한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불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²¹⁾ 학계의 논의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평화통일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위반의 효과 등이다. 해석서 뿐만 아니라 개별논문을조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쨌든 평화통일 원칙을 평화국가원리의 내용으로 삼으면서, 판례를 포함하여 헌법학계가 문제삼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통일 원칙과

18) 김철수는 이원론과 일원론에 대해 유보적이며 실형 일원론을 취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우위인지 국내법우위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본다. 김철수, 앞의 책, 227-8쪽.
19) 김철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 헌법률과 같은 효력의 것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며(유네스코헌장), 명명 규칙과 같은 것도 있다고 본다. 조약 중에서는 국제연합헌장, 국제인권규약 등은 헌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 김철수, 위의 책, 230, 232쪽. 성낙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헌법 하위이나 법률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낙인, 앞의 책, 206쪽.
20) 예컨대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마족의 일부가 우리나라에서 본국에서의 박해에 대항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지위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절대적인 하한선에 의한 평등주의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21)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3 결정.

에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평화통일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2차 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헌법들이 그러하듯 우리의 경우에도 전문에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취지를 헌법 제5조 제1항이 이 어받아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외국인의 지위도 보장된다(제6조). 평화통일에 관하여는,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언급하고 제4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동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제6조 제3항) 취임선서서에도 포함시키면서(제69조) 동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를 들 수 있게 한다(제92조 제1항).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침략전쟁의 부인, 국제법존중주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에, 평화적 통일의 지향이라는 네 번째 요소를 포함시킨다.¹⁶⁾ 첫째, 침략전쟁의 부인에 있어, 침략전쟁을 영토의 확장, 국가정책의 관철,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무력행사(혹은 채권보보를 위한 전쟁 등을 포함)로 이해한다. 여기에는 집단적 자위권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본다.¹⁷⁾ 침략전쟁의 여부에 대해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침략전쟁에 대한 국내법적 판단 즉, 헌법적 효과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다. 방위전쟁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

1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174쪽 이하;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224쪽 이하;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192쪽 이하; 홍성방, 『헌법학』, 원암사, 2003, 181쪽 이하.
17)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헌법학계가 침묵하고 있지만, 건국헌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해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즉, 당시 헌법 제6조도 일체의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유진오는 단지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동맹국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이경주, 『한·일 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비교연구』, 『세계헌법연구』 제4호, 1999, 168-170쪽.

제3조의 영토조항과의 충돌문제이다.²²⁾ '북한은 영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라는 논리를 고수하는 대법원은 평화통일 원칙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또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인식에서는 매한가지이다.²³⁾ 둘째, 평화통일 원칙과 국가보안법의 충돌문제, 정확히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문제이다.²⁴⁾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5항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한 뒤²⁵⁾ 개정된 현재의 국가보안법 역시 평화통일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²⁶⁾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를 강요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

22) 참고로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다음인 1992년에,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영토로 표현하고 있던 72년 헌법의 해당항을 삭제하였다.
23) 학설에 있어서는, 영토조항의 문리적인 해석에만 따르는 것이 갖는 문제점에 주목하는 견해 중에는, 장차 통일된 이후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 헌법변천으로 인해 영토조항이 사문화되었다는 견해, 72년헌법 이래 평화적 통일조항과 충돌하는 관계로 신법우선의 원칙 내지 현실적인 원칙 우선 적용원칙 등을 인용하여 영토조항이 무의미해졌다는 견해, 영토조항은 미래지향적 미완성적 성격의 조항인 반면 평화통일조항은 현실적 구체적 성격의 조항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도희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849쪽 이하.
24) 많은 글 중에 『민주법학』 제16호(판약사, 1999) 특집에 수록된 김민배,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관계의 국제적 환경』; 정태욱, 『국가보안법과 한반도의 평화』; 김중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참조.
25)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3 결정.
26)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결정을 할 때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강조는 필자) 위헌이 아니라고 했는데, 개정법에서는 '명백한 위협의 존재'가 삭제된 상태이다. 따라서 여전히 한정합헌결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형해석방식은 제6조 제1항(감입, 탈출), 제2항(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감입, 탈출), 제3조 제1항(잔양, 고문, 신전, 동조), 제3항(단체구성, 가입), 5항(포획물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 제8조 제1항(회합, 통신 기타 연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9헌바27·51(병합) 결정.

한 협상 내지 공동노력, 상호이익 도모 등의 여지를 현저히 좁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실들은 소개 형식을 빌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극적으로 추수하고 있다. 셋째,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보기 때문에 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법')과의 충돌 내지 효력상의 우열문제가 제기된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성격, 남북교류법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이라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²⁷⁾ 넷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의 문체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아닌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으로 보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²⁸⁾ 헌법학계는 국제법분야에서의 진지한 논의²⁹⁾와는 달리 이 중대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합의서 자체의 법적 구속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남북기본합의서의 3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평화통일원칙의 주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논의확대의 단서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헌법학계에서 다루어지는 평화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평화주의(혹은 평화국가원리)의 내용이 매우 부실한데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헌법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로 인하여 평화국가원리의 내용이 주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로만 분석되고 있다. 외국헌법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과들을 해석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즉, 평화과외행위의 처벌, 평화주의자의 보호,

27)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결정. 소수의견은, 규제대상이 동일함을 전제로 남북교류법 제3조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통신업무의 제공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법과 특별법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8)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결정.

29) 예컨대 제성호, 『남북헌법수관계론』, 한울아카데미, 1995, 특히 51쪽 이하; 이장희, 『남북한 UN가입과 국제법적 과제』, 『법과사회』 제5호, 1992.

통일조항의 충돌문제는 정면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거나 에둘러 가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 등 더 이상 냉전사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문서들이 제시된 이상 그에 걸맞는 논의의 헌법학이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된다.³¹⁾ 현재의 헌법학이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평화통일원칙을 위치지우는 방식을 들 수 있다. 헌법의 원리 혹은 기본질사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를 설정하고 그 속에 평화통일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이 그렇다.³²⁾ 대내적으로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남북한의 관계를 국가대 국가간의 관계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마지막으로 흔히 거론되는 평화국가원리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편협한 해석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침략전쟁의 부인에 있어서 침략전쟁의 정의는 유엔총회결의 등 국제법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 우리 사법부는 극히 소극적이다. 헌법에 반하는 사법부 태도에 대해 학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통일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방식이 특히 중요하다. 진투적 민주주의라는 혐의를 탈어내는 헌법개정 이 종류의 해석태도를 고수하는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북한체제의 바탕원리와 대립하게 된다. 이 경우 헌법규정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은 북한의 붕괴에 이은 흡수통일뿐이다. 현재는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평화적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결여

31) 예컨대 최창동 편저,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 법률행정연구원, 1996, 171쪽 이하.

32) 정동성과 계속성을 포함하여 남북관계를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예컨대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론과 같이 객관적 사료를 공개하는 주장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독일에서 전개되었던 정동성과 계속성의 논의가 적지않은 자극이 될 수 있다. 간단한 소개에 대해서는 최창동 편저, 앞의 책, 8쪽 이하에 서술된 D. Blumenwitz의 분류 참조.

33) 권영성, 앞의 책, 178쪽; 김철수, 앞의 책, 225쪽; 성년인, 앞의 책, 193쪽. 반면 허영과 홍성방의 경우는 평화추구의 이념과 평화국가원리 속에 국제법준중 원칙과 병치시키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167쪽; 홍성방, 앞의 책, 185쪽.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비의 방기·제한, 국제기판에의 주권 위양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론적 노력조차도 포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은 전쟁행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준비행위 나아가 살상무기개발·구입·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확보는 대외적 차원에 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 차원에서도 문제되는 것이다. 전쟁의 부재를 넘어서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차원뿐만 아니라 평화상태의 적극적 실현을 포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에 대한 헌법적 이해는 국제법적 이해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다소 세부적인 문제로 기본권해석론상의 태만을 들 수 있다. 평화국가원리에 대한 이와 같은 빈약한 사고방식은 헌법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지 않았다면 냉전상황에 길들여진 자폐적 한정이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5조 제1항의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래 민중헌법사상에서부터 현대국제법의 중요한 진전 그리고 타국의 선도적 헌법규정들이 기본권해석론을 통해 도입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고 있다. 이러한 소극성으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과 같이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지체 포기되고 있다. 해석론상 제5조 제1항 전단과 제37조 제1항은 뒤에서 논하게 되듯이 평화주의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충전하는데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그간 북한과 남한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편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 성찰이 미진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³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계속성의 문제를 포함한다.³¹⁾ 영토조항과 평화

30) 1민족국가론, 1민족국가2체제론, 1민족2국가론, 대외적으로는 1민족2국가이나 대내적으로는 1민족(1국가)2체제2정부라는 견해 등. 제성호, 위의 책, 27쪽 이하; 김승대,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법조』 제462호, 1995. 맨 마지막 견해에 대해서는 특히 심경수, 『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1, 특히 152쪽 이하.

되어 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겨있는 평화적 통일 방법을 헌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규범학적 논의를 확대하기 위한 단서는 평화개념의 외연을 넓히는 데 있다. 대부분의 헌법해석자들은 평화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없이 논의를 시작한다. 평화를 국가간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칸트에게서 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³⁴⁾ 오늘날의 평화운동이 제시하는 영역은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전쟁뿐만 아니라, 빈곤, 환경파괴, 기후변화 지베체제 등으로부터 인간의 행복과 삶을 보장하는 모든 부문을 포괄한다.³⁵⁾ 국가안보를 비튼 '인간안보'의 관념이 제시되기도 한다.³⁶⁾ 주권국가를 주체로 한 국제법적 한계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평화주의는 국가를 주체로 한 국제적 측면과 개별 국가들을 뛰어넘는 측면 그리고 개별국가 내에서의 측면이 총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모순과 갈등을 전제하는 자본주의체제, 민족주의, 인종주의, 종교원리 등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평화국가원리란, 전쟁과 폭력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내의 갈등구조를, 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는 것을 지향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³⁷⁾

IV. 헌법규범상의 평화주의의 내용

평화개념의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할 수

34)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제시한 평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최상용, 『근대 서양의 평화사상』, 하영선 편, 『21세기평화학』, 풀빛, 2002, 35쪽 이하.

35) C. D. White의 Hunger-making system(Poverty), War-making system(Militarism), Desert-making system(Ecological Crisis), Domination system (Patriarchy)에 대한 저항의 의미에 대해서 이김현숙, 앞의 글, 28-29쪽.

36)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평화개념의 전개상에 대해서는 이상열, 『비판적 평화연구란 무엇인가』, 이경재 편, 『한반도평화론』, 법문사, 1989, 144쪽 이하.

37) 이상열, 위의 글, 146-147쪽 참조.

있는 평화국가원리의 구체적 내용이 마냥 확대될 수는 없다. 현재까지는 의되고 주장되어 온 당위적 요청들을 모두 담아낸다 하더라도 헌법규범학적 재단은 필요하다.³⁸⁾ 여기에서는 헌법원리로서, 평화국가원리의 내용에 대해, 국가간(혹은 국가초월적)의 국제평화주의에 따른 원칙, 평화에 관한 권리의 순으로 몇 가지만 서술하도록 한다. 보편적 원리인 국제평화주의에 대비하여 특수한 원리인 평화통일원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 앞서 주의할 점이 있다. 주지하듯이, 평화국가원리의 구체적 내용은 전시국제법, 국제안보법에 이어 최근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규약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의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그 바탕에는 국가주권평등의 원칙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이들 원리들은 현상유지적 성격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경우에 따라 결핍들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주의를 헤치는 행위가 주로 강대국 내지 패권(주외)적 국가들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평화주의를 위한 소극적 의무부과라는 차원에서 국가주권평등의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1. 국제평화주의

1) 무력행사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의 금지 원칙

유엔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반하는 무력행사와 무력에 의한 위협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력을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압력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압력

38) 정치학 내지 사회학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평화화에 대해서는 이 경제 편, 앞의 책과 하영선 편, 앞의 책에 수록된 글들을 참조 이들의 논의를 헌법규범학에서 재단하는 첫 번째 일기는 헌법원리라는 점이다. 다른 헌법원리와 동치되는 헌법원리로서 평화주의는, 평화학의 논의방식처럼 모든 헌법원리를 아우르는 것일 수는 없다.

용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은 그 본질상 조직화된 폭력이며, 살육과 파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면,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만이 자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⁴²⁾

전쟁수행의 방식과 관련된하여, 특히 핵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의의 전쟁이라는 명분에 부합할 수 없으며,⁴³⁾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현대전쟁수단의 파괴력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수단이 상당성을 결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동원한 정의의 전쟁이란 불가능하다.⁴⁴⁾ 특히 이 원칙은 과거 국제인도법상의 진전에 크게 힘입고 있는데, 예컨대 주네프조약 추가의정서(국제적 무력분쟁과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회생자보호, 1978년 발효)는 무차별공격의 금지, 특정 군사목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공격, 특히 군사목표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한 공격의 금지, 무방비지역과 비무장지역에 대한 일체의 공격의 금지 등을 규정한다.⁴⁵⁾

최근의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인도적 개입에 있어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등반하는 인도적 간섭은 물론 유엔헌장에 의해 금지된다. 따라서 타국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유엔의 관행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는 평화유지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도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⁴⁶⁾

42) Nicaragua v. USA, ICJ Reports(1986).

43) 핵무기규제에 대한 국제법적 흐름에 대해서는 김명기, 「비핵지대화에 관한 일 반적 고찰」, 김명기 외,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국제법』, 소화, 1999, 13쪽 이하. 특히 핵무기보유국의 의무에 대한 국제연합총회결의에 대해서는 19쪽.

44) 山内敏弘, 『人權・主權・平和』, 日本評論社, 2003, 255쪽 이하.

45) 무력충돌에 있어 무차별공격과 무차별적인 무기의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규범 의 전개에 대해서는 김대순, 앞의 책, 962쪽 이하.

46) 실효성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대체로 경무장의 군인이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은 몇 가지 를 아래서 가능하고 있다. 즉, 수용국의 동의 하에 활동하고

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무력행사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의 금지는 국제평화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전쟁이 가장 전형적인 무력행사이니 이른바 평화적 봉쇄도 그에 포함되며, 타국영토로 침입하기 위해 용병 등의 비정규군이나 무장부대를 조 직하거나 조직을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타국 내에서 내전 및 테러행 위를 조직하거나 선동, 지원 및 참여 등도 금지된다. 특히 인민들로부터 자결, 자유 및 독립에 관한 권리를 박탈하는 모든 강제행위도 포함된다.³⁹⁾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무력행사로써 침략전쟁은 유엔총회가 유권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⁴⁰⁾ 그에 따르면 침략이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유엔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제3조)으로, 예컨대 무력에 의한 타국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조약에 의하여 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조약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조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 주둔시키는 것,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 는데 자국영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중대한 무력행위를 타국에 대하여 수행하는 무장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의 '국가에 의한 혹은 국가를 위한' 파견 등(제3조)이다. 침략은 정치적, 경제 적, 군사적 혹은 기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침략전쟁은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이며, 침략으로 확보되는 영토의 취득이나 이익도 합법으로 승인되지 않는다(제5조). 국가의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범죄로 다루어지는 한계가 있긴 해도,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규약에서 포괄하 는 전쟁범죄는 국내법상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⁴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인정되는 자위권 의 발동에 있어서도 한계는 있다. 역사상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은 구별이

39) 1970년의 유엔총회결의 2625-XXV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40) 유엔총회결의 3314-XXIX 'Definition of Aggression'

41) 상세한 것은 木原正樹, 『個人の國際犯罪としての侵略の罪』, 『立命館法學』, 第 278号, 2001, 1154쪽 이하, 같은이, 『國家の國際犯罪としての侵略』, 『立命館法學』, 第273号, 2000, 2294쪽 이하 참조

2)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의 원칙

군사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힘입은 핵무기 혹은 대량살상무기가 국 가의 독립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일 수 없다는 인식은 군 비축소의 소극적인 근거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군비증강이나 군비확대 가 경제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한다는 인식, 자원의 소모성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상징하는 군사비가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인식에 있다.⁴⁷⁾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군축과 군비통제의 필요성이 비등해지고 있다. 군축(disarmament)이 다소 이상주의적 접근인 데 비해 군비통제(regulation of armaments)는 냉전시기의 현실주의적 접근의 결과물이다.⁴⁸⁾ 따라서 군사력의 구조 및 운용에 대한 통제로 국한되 는 군비통제는 곧바로 규범화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유엔헌장 제 11조의 군축과 군비통제의 원칙은, 부분적 핵실험금지협약, 핵확산금지조 약, 새군비기 및 독소병기의 금지협약, 탄도탄요격미사일체제 제한협정, 전략무기제한협정,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우주공간에서의 배치금지, 핵무기 등의 심해저·해상·지하 등에의 배치금지협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⁴⁹⁾ 궁극적으로 각 국가들의 군사적 잠재력을 축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원칙은, 통제대상무기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기후협약 등 에서 추구하는 방식처럼, 기존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시간표에 따라 일정 량씩 감축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현해갈 수 있다.

3) 무기수출입 규제와 포괄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의무'

세계무기수출은 거의 대부분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과 독일에 의한 것 이다. 반면 주요 무기수입국으로는 일본을 제외하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동위가 철회되면 철수한다는 점, 분쟁의 어느 한 편에 기울지 않고, 평화유지 군은 전투를 하지 않으며 단지 자위를 위해서만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김대순, 위의 책, 943쪽 이하.

47) 杉原泰雄, 앞의 책, 220쪽 이하.

48) 함택영, 『한반도 군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한국인권재단 편, 앞의 책, 276쪽.

49) 김대순, 앞의 책, 965쪽 이하.

아,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이스라엘, 한국 등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전시국제법에서 말하는 전쟁당사자에 대한 무기판매의 분배를 포함하여, 분쟁의 확대 심화를 초래하는 무기거래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 특정 종류의 무기에 대해 조약상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레식 무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무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등 무기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적극적 평화구축의 한 방편이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을 '긴장완화를 위한 의무'로 뒷받침하려면, 전쟁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 또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특정한 전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도, 군비증강을 두려워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내지 평화추구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를 구상할 수 있다.

4)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국제의무의 성실한 이행의 원칙 등

유엔헌장(제2조 제3항과 제33조-제38조)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국제평화 및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유이나 그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하고 하나의 평화적 해결이 실패했을지라도 다른 평화적 해결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예컨대, 교섭, 사실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기구 및 지역협력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평화의 유지와 달성이 오로지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나,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주화라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 협조에 의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힘에 의한 위계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구조적 폭력을 단순 승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위법한 전쟁에 호소하는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고, 혹은 그러한 국가가 출현한 경우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유엔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다. 1998년 광주 아시아인권선언에서도 평화롭게 살 권리(right to live in peace)를 선언하고 있다. 전쟁과 내전, 군사화된 국가, 시민사회가 가하는 위협과 공포, 무질서와 국가폭력,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시한 사회의 안전, 억압과 착취, 환경상의 안전, 파시즘과 식민주의 그리고 신식민주의, 인권탄압의 빌미로 작용하는 외치·유치, 국가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등을 그 안에 담고 있다.⁵³⁾

현시대의 구조적 폭력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권선언에서의 평화에 대한 권리는 독자적인 보호영역을 구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일본 헌법의 독특한 규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일본 하급심판례와 학설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급심에서 겨우 발견음을 뎀 데 불과하지만, 일본헌법체계에서 이해하는 평화적 생존권은 일본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제2조로부터 도출한다. 평화적 생존권을 둘로 나누어 협의로는 '평화 속에서 문자 그대로 생존하는 권리 혹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로, 광의로는 '전쟁의 위협과 군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모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는 견해가 유력하다.⁵⁴⁾ 전쟁(내지 전투)과 전쟁준비, 군비증강 등 앞서 분류한 국제평화주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경우, 협의의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이다.⁵⁵⁾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그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주시해야 하는 것은 광의의 평화적 생존권을 넘어서는 권리 즉,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여 '평화 속에서 살아갈 권리'이다.

평화적 생존권보다 더욱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병역강제를 자신의 양심에 따

53) 아시아인권선언장 선언대회 자료집, 1998, 120쪽 이하, 특히 126쪽.
54) 山内敏弘, 앞의 책, 99-100쪽.

55) 질프론을 계기로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소송상의 구체적 권리로 구성하려는 것에 대하여 浦田賢治, 『平和的生存權の新しい辨證』, 憲法學叢書 131, 131쪽 이하. 裁判, 『立憲主義・民主主義・平和主義』, 三省堂, 2000, 551쪽 이하.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유엔총회에서는 군축에 관하여 보편적 조약을 통해 군축을 달성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 활용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2. 평화에 대한 권리

평화의 문제를 인권 내지 기본권으로 구성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원리로서의 평화주의(혹은 평화국가원리)를 구현하는데 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이론적으로, 평화권에 대한 제한사유로서의 '국가안전보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주어질 수 있다.

평화에 대한 권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국제법상의 평화권, 서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일본에서의 평화적 생존권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각국 국내법상 승인되고 판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평화에 대한 국제법상의 진전을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당장이라도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분야에서 축적되는 성과가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⁵⁰⁾ 평화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도 같은 우려를 자아낸다. 평화권의 관철을 위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내렸던 판단이 국내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⁵¹⁾

평화에 대한 권리(right to peace)의 국제법적 전개는, 2차대전 후 학술과 선언 등 일련의 노력 이후, 1978년 유엔총회결의 '평화적 생존을 위한 사회의 준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eparation of Societies for Life in Peace)⁵²⁾으로 이어졌다. '모든 국민과 모든 인간은 평화 속에서 생존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은 1984년에도 재차 반복되었

50)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통권 제17호, 판악사, 2000, 158-161쪽.

51) 예컨대, 손종규, 박태훈, 김근태 등의 청구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B규약의 반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내법원은 효과적인 구제를 거부하였다. 정경수, 위의 글, 164쪽.

52) 1978. 12. 15, A/RES/33/73.

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지만 최근 대체복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⁵⁶⁾ 징병제의 유무, 국가긴급사태시의 특별한 취급, 비군사적 대체복무의 인정 등의 다른 고려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방향이 대체적인 추세이다.⁵⁷⁾ 종교적(평화주의라는 종교상의 교리), 윤리적(개인의 도덕률), 정치적 양심(국제법이나 국내법을 근거로 특정 전쟁에의 참가를 거절)에 따른 병역거부는 각 국가별로 달리 평가되고 있다. 징병제가 없는 영국은 모두를 인정하고, 북유럽의 나라들은 정치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부인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많은 나라들은 대체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을 인정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률로 승인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은 이 권리를 헌법상 승인하고 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핵심은, 단순히 종교상의 교리에 반하므로 거부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상의 교리가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종교상의 교리와 같은 정도의 윤리적, 정치적인 확신으로 평화주의를 신봉하는 경우,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의 입장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자의 양심의 존엄에 대한 외경'은 기본권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군비와 징병이 절대적인 공익으로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⁵⁸⁾ 최근 이 스타일의 몇몇 조종사들이 벌이는 항명상황은 최소한 국제규범에 위반하는 전쟁(전투)을 거부하는 병역(전투)거부권을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한지라고 할 수 있다.

V. 평화통일원칙

56) 안경환·장복희 편,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조국, 『양심적 징병거부권』, 『민주법학』, 통권20호, 2001, 131쪽 이하.

57)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현황에 대해서는 조국, 앞의 글, 142-3쪽.

58) 麻生多聞, 앞의 글, 36쪽.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평화통일원칙은 원칙적으로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제평화주의의 국내법적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화국가원리를 국제평화주의와 동치시킨 다음, 그렇게 이해한 평화국가원리에 평화통일원칙을 넣는 것은 잘못이다. 왜하면 평화통일원칙은 국제법적 측면과 국내법적 측면을 아울러 규율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국제평화주의가 요구하는 원칙들을 한계로 삼고, 그보다 더욱 엄격한 평화적 방법을 규범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예컨대 긴장완화, 군축, 경찰력을 포함한 두력행사의 자제, 신뢰회복의 의무 등, 국제평화주의의 내용보다 더 적극적인 규범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통일원칙의 규범적 내용은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 등)와 이듬해 9월 17일의 6개의 부속합의서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화통일원칙은 이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효력을 신시협정으로 축소시킨다고 할지라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들어있는 세 가지 주요원칙⁵⁹⁾을 헌법상의 평화통일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⁶⁰⁾

1. 남북화해의 원칙

이 원칙은 남과 북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상호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아

59) 남북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1. 남북화해 2. 남북불가침 3. 남북 교류·협력으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92년 별도의 부속합의서들을 채택하였다. 이하 평화통일원칙의 세부내용은 이제 가지 원칙을 말한다.

60) 참고로, 동서독의 기본조약은 상호동맹관 및 정상화된 신년관계(제2조), 유엔헌장의 목적 및 원칙의 존중(제2조), 무력포기의 경제선존중(제3조), 단독대표권의 포기(제4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정신존중 및 균비축소(제5조), 영역한경의 원칙 및 독립, 자주성의 존중(제6조), 협력 및 사회개발(제7조), 상호대표부의 설치 및 교환(제8조), 기체결조약의 상호존중(제9조), 효력발생(제10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세한 것은, 이장희, 「남북한 UN가입과 국제법적 과제」, 『법과사회』, 제5권, 1992.

체의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적대적 태도를 불식시키는 것보다 더욱 나아가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준엄을 지키기 위한 협조의무를 지며,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2. 무력 불사용의 원칙

국제평화주의의 내용인 무력행사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의 금지 원칙은 평화통일원칙에 있어서는 더욱 강화된다. 남과 북은 자기 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무력도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공격해서도 안되고 일시라도 침령해서도 안되며,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켜서도 안된다. 합의에 따라 오가는 상대방의 수송수단들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모의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일체의 적대행위는 금지된다.⁶¹⁾

다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평화적 해결원칙을 제시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에 대한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계획적인 무력침공정후에 대해서는 경고와 동시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발적인 무력충돌이나 침범가능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 상호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침범의 경우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은 확인 후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돌려보내야 한다.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는 자기 측의 적대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상대방에게 즉시 알린다.

61) 다만, 북측이 제기한 분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문제, 영해와 영공의 분쟁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는 계속 협의하도록 했다.

야 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소극적인 원칙이다. 이때 남북간의 상호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할지라도, 남과 북이 각각 제3국과의 관계에서 주권국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평화통일원칙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주권국가 상호간의 국제평화주의를 넘어서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대등사자 관계를 말한다. 그 출발점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서로의 체제를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범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⁶¹⁾ 상대방의 법률서와 정책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대외관계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시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특정한, 당국을 비방·중상해서는 안되며, 금지되는 비방·중상행위는 자기 내부의 군중집회를 포함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테러, 포섭, 납치, 살상 등 직·간접 그리고 폭력과 비폭력의 모든 파괴·진북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목적으로 하는 선전산행위도 금지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해서도 지원해서도 안된다.

현재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성실의무가 있다.⁶²⁾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1992. 2. 19)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이고,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 다만,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

61) 다만 부속합의서에서는 이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의무지를 뺐다. 국가보안법을 논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미수복지구'나 '북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한 정리로 이장희,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민화협정책위원회 편, 「민족화해와 평화정착」, 한울아카데미, 2001, 22쪽.

62)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흔히 평화협정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국제법출판사, 1994, 108쪽 이하; 박현식, 「한국정전협정 대체문제」, 『민주법학』, 통권20호, 2001, 87쪽 이하; 『역사비평』, 2003년 여름호 특집의 4편의 논문 참조.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평화협정이 지난 문재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색으로 최철영,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정전협정의 대안」, 『역사비평』, 통권 제63호, 2003, 77쪽 이하.

3. 남북교류협력의 원칙

위의 두 원칙이 소극적 측면이 강한 반면 이 원칙은 상호간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앞의 두 원칙과는 달리 이 원칙의 준수 여부는 양 당사자들에게 상당부분 맡겨져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포기 내지 중단하는 정도에 이르면 평화통일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는 교류협력의 대상과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모도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경제교류를 실현한다. 특히 물자교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항로를 개설한다.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국제경제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출한다.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 서로 협력하며 공동으로 진출한다.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되,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4. 자주적 통일 원칙의 문제 등

긴장완화와 화해교류를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파 그 이후 6·15선언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온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사상·이념·제도·체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 중 자주적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세하지 않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자주적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는' 통일의 해결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바가 없다.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남과 북이 각각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조약들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자주적 통일원칙은 다소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저해적, 긴장조성적, 대결유도적 외교 활동 및 국제관계형성행위는 자주적 통일원칙에 위배하고 그러므로 평화 통일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속적 한미군사동맹관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⁶⁴⁾

덧붙여, 평화통일원칙이 국제평화주의를 하한선으로 한다고 보면, 이로 부터 국제평화주의원칙에서 요청된 세부지침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한다. 특히 군비통제의 군비축소의 원칙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의 준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남과 북이 해당 조약(예컨대 핵실험금지협약 등)의 채약국으로서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향유하는 탈퇴의 자유는 그것이 긴장조성적이어서 평화통일원칙에 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남측에 배치된 핵무기 등의 문제⁶⁵⁾와 공격목적의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VI. 맺는 말

헌법의 해석을 통해 평화주의에 대한 규범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평화상태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낭만적이다. 그렇

64) 서보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과제와 한·미동맹의 개혁」, 한국인권재단 편, 앞의 책, 84쪽 이하.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으로 첫째, 무력공격에 대한 정의가 없고, 둘째, 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군사주권의 문체를 들고 있다.

65)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창희, 「미국의 한반도비핵화정책」, 『김영기 외, 앞의 책』, 167쪽 이하.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에서는 핵무기 실험, 제조, 생산, 점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지만 규범적 해석의 유용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허무적이다. 특히 평화국가원리(평화주의)와 같이 그 자체가 민중의 이익에서 출발하는 경우라면 규범적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실천적이다. 아무런 내용 없이 남겨두는 것은 폭력적 상황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 정부의 군사비지출확대, 이라크파병, 6자회담 등등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평화국가원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헌법을 가운데 두고 논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칙의 두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다뤘다. 냉엄한 힘의 각축장에서 강대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수되는 국제법규범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법을 무시하는 유일한 패권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국제평화주의에 기대는 것은 약자의 굴종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민중들이 분명히 자각했듯이 전쟁의 이익은 지배계급만이 전유한다.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적으로 강제하고 평화통일원칙을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높여가야 할 절실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제어 : 평화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원리, 평화에 대한 권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1. 평화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헌

-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Preparation of Societies for Life in Peace
-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 Declaration on the Us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Interests of Peace and for the Benefit of Mankind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 go.jinbo.net (평화권 모임)

2. 국제인도법 관련 문헌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로마규정

참고자료 1. 국제인도법 개론

참고자료 2. 국제형사재판 제도의 발전

3. 사회운동

□ Hague Appeal for Peac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마르크스주의와 폭력: 전쟁 및 혁명을 중심으로

박호성

| |
|----------|
| 목 차 |
| I. 머리말 |
| II. 전쟁론 |
| III. 혁명론 |
| IV. 맺는말 |

I. 머리말

한나 아렌트는 치열한 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월남 전쟁과 미국 내의 흑백문제 등으로 인해 날로 그 기세가 세차고 사나워가는 학생운동을 목격하면서 '폭력'에 관한 저술을 집필하였다.¹⁾ 여기서 그녀는 이러한 폭력적 현상이 난무함에도, 또 폭력이라는 것이 정치현실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 또는 역사이론 등에서 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통렬히 개탄하고 있다. 아렌트는 폭력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짐으로 인해 생겨난 연구의 소홀함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사실 그것은 정당한 지적이다. 홉스봄도 "모두가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꼬집고 있다.²⁾

물론 아렌트는 폭력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그녀는 권력(power)은 그 자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Hannah Arendt, On Violence(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70)

2) Eric Hobsbawm, Revolutionaries: Contemporary Essays(New York: Pantheon Books 1973), p.209

체가 통치의 정수(essence)며 목적이므로 절대적이고, 따라서 정당화(justification)가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반면에 폭력(violence)은 원래 도구적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통해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인가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무엇인가의 정수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폭력은 비록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결코 정당한(legitimate) 첫질 수는 없다". 폭력은 곧 파괴적이며, 비인간적이다. 그러므로 아렌트는 폭력의 실천을 통해 세계를 비록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가장 가능한 변화란 더욱 더 폭력적인 세계"의 창출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다.³⁾ 이처럼 그녀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렌트는, 예컨대 메넨과는 달리, "기존 체제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폭력"(establishment political violence)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른바 '부르주아적' 이론가들은 정치적 폭력을 대체로, 물리적 파괴, 살상, 억압, 위협 등을 통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기존 역량을 보충·증진시킴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⁵⁾ 그에 따라 폭력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 반도덕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폭력이 어떠한 기능을 소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연적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⁶⁾ 따라서 폭력의 성격과 역사적 역할은 계급의 이해관계와 속성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

3) Arendt, 앞의 책, p.51-53 및 80: 'power', 'strength', 'force', 'authority', 'violence' 등의 유사 개념, 특히 power와 violence의 차이점에 관한 아렌트의 개념적 구분은 참고하기 위해서는 p.44-56을 볼 것.

4) 이에 관해서는 Fred R. von der Mehden, Comparative Political Violence(Prentice-Hall: NJ 1973), 특히 p.39를 볼 것.

5) 같은 책, 특히 p.5를 참고할 것.

6) 다양한 사회주의 조류들의 폭력에 대한 입장과 그 역사적 변천을 각각히 참고하기 위해서는, Neil Harding, "Socialism and Violence", in: Bhikhu Parekh(Ed.), Socialism and Socialism(Holmes and Meier Publisher, Inc.: New York 1975),

은 사회주의적 폭력의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과 혁명의 해부를 통해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적 폭력의 본질에 착실히 육박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 속에서 나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폭력의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전쟁과 혁명을 바라보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시각을 면밀히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그들은 전쟁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2) 그들은 전쟁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며, 전쟁을 어떠한 기준에서 정당화하거나 배척하는가, 3) 특히 말년의 엥겔스는 왜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는지, 4) 그들은 어떠한 혁명 원칙을 표방하였으며, 그것이 지닌 근원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5) 그들의 혁명론은 왜 좌절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레닌에게 계승되었던가 하는 등 등의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가 이해하는 폭력의 개념 및 구조에 관한 철학적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폭력 현상에 대한 정치학적인 분석이다.

II. 전쟁론

의심의 여지없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갈등은 계급간 그리고 민족 상호간의 알력과 충돌에서 비롯한다.⁹⁾ 마르크스도 프루통을 공박하는 '철학의 비판' 부록 속에서 "한 민족 안의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민족" 상호간의 "참혹한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지적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듯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쟁의 내용 속에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가간의 전쟁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계급 투쟁을 모든 전쟁의 본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서 계급사회가 존속하는 한, 전쟁

9) Johan Galtung, Theorien des Friedens, in: Wie lösen Wir in Zukunft die politischen Konflikte?, Muenchen 1970, S.139 참조.

10) Marx, Das Elend der Philosophie, Beilagen, MEW 4, S.555

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폭력이란 "자신의 의지를, 타 계급세력들에게 강요하고 자신의 이해를 타 계급이해에 맞서 관철시키기 위한, 특정적 계급세력의 정치적, 특히 국가적 권력수단의 활용"을 뜻한다.⁷⁾ 따라서 폭력에 대한 도덕적·판별적·비역사적 문제제기는 근본적으로 거부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폭력이란 계급지배의 필수적 수단이며 도구로서 계급적 모순과 적대적 지배하는 사회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역사적 현상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폭력은 계급사회의 보편적 실존이기 때문에 계급적대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소멸할 때까지 끊임없이 존속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계급투쟁 및 계급이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관찰되어질 수 밖에 없는 폭력은 혁명적 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이런 관점에서 폭력(Gewalt)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도 설파했듯이, "새로운 사회를 출산시키는 모든 낡은 사회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다.⁸⁾ 반면에 반동적 계급이해 및 계급지배를 옹호하는 폭력은 의당 처벌과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적 폭력은 진보적·혁명적 폭력과 보수적·반동적 폭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폭력은 계급지배의 종언, 곧 자본주의의 극복과 더불어 비로소 소멸되어질 수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폭력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따져본다는 것은, 첫째로 보수적·반동적 폭력으로서의 자본주의적 폭력, 즉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해 자본가 계급이 구사하는 다양한 계급지배의 수단과, 둘째로 진보적·혁명적 폭력으로서의 사회주의적 폭력, 즉 이러한 자본주의적 계급질서를 철폐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활용하는 다양한 계급투쟁적 수단, 이 두 가지 대상을 동시에 분석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전쟁과 혁명은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적 폭력 범주에 속한다. 이 두 현상은 방금 위에서 언급한 분석의 두 가지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충실히 지니고 있다. 전쟁의 개념 속에는 자본주의적 폭력의 근본속성이 짙게 함유되어 있다. 반면에 혁명

7) Philosophisches Wörterbuch, G.Klaus/M.Buhr(Hg.), 제11판, Leipzig 1974, Bd.1...
8) Marx, Das Kapital, MEW 23, p.779

한 의미에서의 평화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급모순, 계급착취, 계급갈등 등이 지배하고 있는 계급사회는 전쟁과 혁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어지는 사회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란 계급지배가 극복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 된다. 결국 계급투쟁이나 혁명은 궁극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즉 폭력의 존립근거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등장한다. 이런 뜻에서 혁명은 폭력의 지양을 위한 폭력적 수단인 셈이다.¹¹⁾ 나아가 그것은 전쟁을 수단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 전쟁의 개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간의 상호충돌을 개념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유럽의 산업화된 국가 내부의 여러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묘사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필연적으로 내재해 있는 운동법칙으로서의 '전쟁'구조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넓은 의미의 전쟁 개념을 도출해내었던 것이다.

'전쟁'은 마르크스에 의하면 "탐욕가들 속에서 전쟁"¹²⁾을 의미하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은...정복전쟁(Eroberungskrieg) 상태"¹³⁾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엥겔스는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사회전쟁'(sozialer Krie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840년대 초 영국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사회전쟁의 폭발이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자는 자기 자

11) 유사한 의미에서 1950년대 말 무렵부터 소련에서도 전쟁(Krieg)을 "평화를 위한 투쟁"(Kampf für den Frieden)으로 새롭게 지칭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Wolfgang Leonhard, Sowjetideologie heute 2: Die politischen Leiren(Frankfurt 1962), p.88을 참고할 것.

12)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MEW, Ergänzungsband 1, p. 511.

13) 같은 책, S. 482.

신만을 위해 존재하며, 스스로를 위해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맞붙어 싸운다... 이 이상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동료 인간들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차이는 위협이나 자구책(自救策), 법원의 판결로 해결된다. 간단히 말해서 각자는 타인을, 해치워야만 하는 적(敵) 혹은 기껏해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착취해야만 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¹⁴⁾

이러한 언급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에, 군사적 무력충돌이라는 전통적 의미에 전쟁을 한정시키지 않고, 더욱 광범위하게,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기적 이해를 추구하는 근대적 시민사회에서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라는 의미로 전쟁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미 여기서 전쟁의 본질을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정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이러한 '사회전쟁' 개념은 마르크스의 엥겔스의 사상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간의 상호갈등에 의해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종결되어진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 발전과정 속에서 '사회전쟁'은 마침내 "부처에 대한 빈자의 전쟁"¹⁵⁾,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간의 조직된 무장투쟁으로 이해되는 '내전'(Bürgerkrieg)의 형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 내전은 자본주의적 계급투쟁의 정점(頂點)으로 인식된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 내부의 모든 개인과 계급들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적대상태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사회전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조직된 계급들 사이의 내전으로 해소하는 '정치전쟁'에도,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¹⁶⁾ 국가간의 전형적인 전쟁에서도 기본적으로 계급정권이 추구된다. 이 경우 비록 국가가 전쟁수행의 주체로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계급간의 투쟁이라는 '내전적' 성격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전쟁개념은 "민족

14) Engels,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MEW 2, p. 359.

15) Engels, "Zweite Elberfelder Rede"(1845년 2월 15일), MEW 2, p. 504.

16) Wolfram Wette, Kriegs theoriendeutscher

Sozialisten(Stuttgart/Berlin/Köln/Mainz 1971), p.27을 참조할 것.

러나 그들의 전쟁개념이 지니는 계급적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계급투쟁을 통해 역사발전의 결정적 계기를 찾아내는 그들의 혁명이론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전쟁이론 역시 간접적으로 추출이 가능하다.

이미 언급한 '사회전쟁'의 개념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시민사회의 근본악을 바로 '자유전쟁'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원인을 추적한다는 것은 우선 전쟁의 본질에 관한 분석으로 귀결되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에 대한 해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관계와 더불어 유물사관의 핵심적 범주를 형성하는 물질적 생산력을 바로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역사발전의 일정 단계에서는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것이 그 속에서 운동하던 기존의 생산관계, 혹은 그 법률적 표현인 소유관계와 모순에 빠진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충돌, 즉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혁명이 필연적이다.²²⁾ 역사발전의 제 1 단계는 이러한 충돌과 모순의 최결을 거나하는 계급투쟁에 의해 규정되고 구별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대적 생산력과 시민적 생산형태의 모순"²³⁾,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의 집중화와 노동의 사회화"간의 모순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임종"의 종이가 울리고 "착취자가 착취당하는" 사회가 찾아오게 된다.²⁴⁾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 - 궁극적으로는 근대적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간의 충돌과 모순 - 에서 바로 '사회전쟁', 나아가서는 혁명 또는 국가간의 전쟁 등이 발생한다. 여기서 혁명 또는 전쟁이란, 말을 바꾸어서 하면,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조화를 재창조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뒷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논리는 혁명전쟁의 마르크스주의적 정당화 이론으로 동원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은 "한 민족 내의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민족" 상호간의 "참혹한 전쟁"의 형식을 통해 표출된다.²⁵⁾

22)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13, p.8-9

23) Marx, 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1848-1850, MEW 7, S. 18.

24) Marx, Das Kapital, Bd.1, MEW 23, p.791

25) Marx, Das Elend der Philosophie, Beilagen, MEW 4, p.555

적이고 국제적인 범주에서의 계급간의 무력적 대결" 또는 "무력을 수단으로 하는 계급정책의 지속"이라 정의될 수 있다.¹⁸⁾

한마디로 전쟁이란 계급사회적 속성의 반영물이다. 따라서 계급사회에서의 평화란 단지 "비전쟁(非戰爭) 상태"(Zustand des Nichtkrieges), 즉 "다른 국가와 민족을 비전쟁적 수단으로 억누르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도모하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지(休止)"에 지나지 않는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지 노동자 계급에게만 전쟁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이 부여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자 계급만이 "경제적 비참과 정치적 광란으로 점철된 낡은 사회와는 반대로, 모든 민족마다 동일한 원칙, 즉 노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국제적 원칙이 '평화'가 될 것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역량을 소유한다.²⁰⁾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에 의한 착취와 억압이 사라지고 자본과 노동의 상호갈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수립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민족 내부의 계급들간의 적대와 더불어 민족 상호간의 적대적 태도 또한 사라질"²¹⁾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 내부의 평화는 국제평화의 필수적 기본전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계급갈등과 계급적대극복으로써만 가능하다.

2. 전쟁의 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체계적으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그

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예컨대,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은 양쪽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대해서도 파멸적으로 작용하는 내전(Bürgerkrieg)이 될" 것이라 쓰고 있다.

1868년 9월 10일의 Marx의 서신, MEW 32, p.538 f

18) W. Wette, 앞의 책, p.27

19) Philosophisches Wörterbuch, 앞의 책, p.429를 참고할 것.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쟁관에 대한 설명이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전쟁 개념에도 원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 Marx, Erste Adresse über den Deutsch-Französischen Krieg, MEW 17, p.7

21) Marx, Die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EW 4, p.479

전쟁을 일단 민족 내부의 계급투쟁과 그것의 외연적 확장으로서 국가간의 전쟁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논리를 따를 때 계급사회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²⁶⁾ 바로 계급사회의 근본적 모순이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계급분열을 고착화시키고 계급지배의 충실한 도구로 기능한다고 일컬어지는 국가와 전쟁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배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권력과 전쟁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착취도구'로서, 그리고 '계급지배의 필수적 수단'으로서, 자본주의적 지배질서의 효율적인 유지·강화를 위한 전쟁의 수행 주체로 등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앞에서 말한 역사철학적 일반 범주에서 일탈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의 토대로 삼아 전쟁의 원인을 파헤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을 주기적 전쟁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경우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보나파르티즘이란 "부르주아지가 민족을 지배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노동자계급이 그 능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시대의 유일하게 가능한 통치 형태"를 의미한다.²⁷⁾ 엥겔스는 보나파르티즘의 내용을 좀더 구체

26) Wette는 마르크스가 어디에서도 "계급사회에서의 전쟁의 불가피성이라는 독단적인 태제"를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단언한다(Wette, 앞의 책, p.36/38). Wette는 여기서 논리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계급투쟁의 '형태'가 '폭력적'이나 '평화적'이나 하는 문제와 계급투쟁 '자체'를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즉,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혁명적 이행은 반드시 폭력적 방법의 호소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이 이행과정이 나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여러 나라들의 제도, 풍습, 전통들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또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Marx, "Rede über den Haager Kongress"(1872), MEW 18, p.160(강조는 필자)]. Wette는 계급투쟁의 형태로서의 폭력성이 라는 문제와 계급투쟁 자체를 혼동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마르크스는 Wette의 견해와는 달리 넓은 의미에서의 전쟁은 자본주의 사회(계급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 간주한다.

27) Marx,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1871), MEW 17, p.338

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보나파르티즘이란 “노동자계급이 도시에서는 높은 발전의 단계에 처해 있으나 수(數)에 있어서는 농촌의 소농에 뒤떨어지고, 대규모 혁명투쟁에서는 자본가계급, 소시민계급 그리고 군부에 ‘굴복당하는 나라에서의 필연적 국가 형태이다. 프랑스의 1848년 6월 투쟁에서 파리 노동자들이 패배했을 때, 부르주아지도 동시에 이 승리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렸다. 부르주아지는 두번 째의 그러한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깨달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명목상으로만 지배했지 실은 지배의 여력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승리자인 군부가 도시에서의 소요로부터 안정을 찾고자 했던 소농계급에 의탁하여 (권력의) 정상을 차지하였다. 이 지배 형태는 군사적 전체정이다.”²⁸⁾

보나파르티즘이란 다시 말하면 힘이 쇠잔할대로 쇠잔한 부르주아지를 대신하여 군부가 자본주의적 지배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군사적 독재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나폴레옹 3세는 확고한 지지 계급을 배후에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체제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러한 약점, 이러한 난국을 외부로 전가시킴으로써, 즉 성공적인 대외정책의 수행을 통해서, 내부에서의 계급투쟁의 발발을 저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²⁹⁾ 보나파르티즘은 혁명에 대한 공포, 군부의 예측, 국가재정의 개선 욕구, 프랑스의 소비니즘에의 유착 압력이라는 주요한 국내정치적 난제를 대외적 성공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시도하였다고³⁰⁾ 따라서 대외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혁명적 변화를 두려워하는 지배체제의 내부적 허약성이다. 즉, 내부적 위기를 주기적 대외전쟁으로 호도하고 해소해보고자 했던 정치체제가 바로 보나파르티즘이었던 것이다. 전쟁은 나폴레옹 3세의 “왕좌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불가피한 강제”였다.³¹⁾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보나파르티즘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계급분열·계급모순에 기초한 국가가 어떻게 전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28) Engels, Die preußische Militärfrage und die deutsche Arbeiterpartei(1865), MEW 16, p.71

29) 그에 따라 나폴레옹 3세는 크림전쟁(1854-56), 이탈리아전쟁(1859)을 치르고, 영국과 함께 대 중국전쟁을 수행했으며(1856-58, 1868), 인도지나의 정복에 박차를 가했고, 이욕고는 보불전쟁(1870/71)으로 인해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30) Wette, 앞의 책, p.46을 참고할 것.

31) Marx, Die französische Abrüstung, MEW 13, p.448

저지시키리라고 평가되는 전쟁을 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바로 혁명의 기준을 통해 전쟁의 정당성 여부가 규명되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원칙적으로 혁명적 폭력을 구체제 및 구사회의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때 이 폭력은 계급투쟁의 정점(頂點)으로서의 내전(Bürgerkrieg)과 국가간의 전쟁을 포괄한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혁명 상황과 전쟁의 역사적 체험에 대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어떤 입장을 견지했던가 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세 개의 경우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전쟁 정당화 논리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1848-49년 혁명과정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난관에 봉착한 것처럼 보이는 혁명을 새롭게 촉발시킬 수 있는 동력과 추진력으로서 전쟁의 발발을 기대하였다. 예컨대 1849년 영국에서의 혁명발발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못하자, 그리고 1848년 혁명이 반동의 승리로 종결되어감을 목격하면서, 마르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적 봉기, 즉 세계대전”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³²⁾ 왜냐하면 프랑스 노동자의 혁명적 봉기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유럽 대륙 내부의 전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면서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영국에 의해 그 전쟁이 바로 “세계대전화”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마르크스는 “유럽 전쟁을 프랑스에서의 성공적인 노동자 혁명의 첫 결과”로 보았던 것이다.³⁴⁾

특히 러시아는 원래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증오의 대상이었다. 러시아는 유럽의 진보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반동의 보루로 낙인찍혔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전쟁의 성과와 모든 서유럽 제국들, 특히 독일에서의 혁명 가능성은 서로 켈 수 없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비쳤다. 다시 말해 독일 혁명의 성공을 위해 반동적 러시아와의 전쟁은 불가피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과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³⁵⁾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민족해방 역시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말하자면 러시아와의 전쟁은 “유일하게 가능

33) Marx, Die revolutionäre Bewegung, MEW 6, p.150

34) Ibid.

35) Neue Rheinische Zeitung, Nr.42(1848.6), Die auswärtige deutsche Politik und die letzten Ereignisse zu Prag, MEW 5, p.202-205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바로 정치경제적 지배계급에게 국가적 전쟁 정책의 근본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전쟁의 계급적 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3. 전쟁의 정당화 논리

전쟁을 흔히 절대악으로 간주하는 평화주의적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gerechter Krieg)과 ‘불의의 전쟁’(ungerechter Krieg), 혁명적 전쟁과 반동적 전쟁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체계화시킨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아니라 오히려 레닌이라 말할 수 있다.³²⁾ 그러나 우리는 여러 구체적 전쟁사화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입장표명에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논리체계를 추출해낼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전쟁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전쟁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 전쟁의 발발과 종결이 유럽내의 혁명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혁명론적 입장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의 잣대를 들고 그것을 측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전쟁과, 그것을 지면 또는

32) 레닌은 “사회주의자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모든 전쟁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자가 인정해야 하는 전쟁을, 첫째 혁명전쟁, 둘째 계급투쟁의 발전적이고 심화된 형태로서의 내전, 셋째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부르주아지로부터 타반쪽의 해방을 추구하는 전쟁으로 구분한다(Lenin, On War and Peace(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70), pp.59-62). 레닌의 ‘정당한 전쟁’과 ‘불의의 전쟁’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Lenin, On Just War and Unjust War(Moscow, Progress, 1984)를 참고할 것.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전쟁’을 “피억압 계급의 억압에 대한, 노예의 노예 소유주에 대한, 농노의 영주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전쟁, 그리고 민족해방전쟁, 사회주의의 수호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쟁과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반면에 “타국과 타민족을 정복하고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전쟁”을 ‘불의의 전쟁’으로 규정한다. W. Leonhard, 앞의 책, p.90에서 제

한 방안”이었던 것이다.³⁶⁾ 이처럼 반동적 러시아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증오심과 전쟁불사적 태도는 적어도 1차대전 이후 무렵까지 유럽 노동운동이 러시아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진통적인 적개심의 원류를 형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³⁷⁾

어쨌든 이 시기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의 성공은 폭력과 전쟁에 의해 서만 쟁취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마찬가지로의 논리에서 이 1848-49년 혁명과정에서 “배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식된 동유럽 슬라브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냉혹한 응징을 요구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이 혁명이 좌절된 까닭을 특히 엥겔스는 슬라브민족의 “반 혁명적” 배반에서 찾고 있으며, 이들 “민족소태기”들은 “반혁명의 광적인 전담자”이기때문에 “그 이름까지” 철저히 말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엥겔스는 이들 슬라브 소수민족들에 대한 불퇴전의 “진멸정책”과 “가차없는 테러”를 촉구하였다.³⁸⁾

(2) 1870년의 보불전쟁에 직면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전쟁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유럽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주의 혁명의 쟁취라는 프롤레타리아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조명하고 관찰하였다.³⁹⁾ 그리하여 그들은 프리시아가 승리하고 프랑스가 패배하는 것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기여로 간주하였다. 즉 프리시아의 승리는 독일 노동운동의 집중화와 ‘민족적 차원’의 조직화를 가능케 하는 반면에, 프랑스의 승리는 보나파르티즘의 흥성이라는 반동화 경향을 촉진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패배는 혁명으로 귀결될 것이지만, 프리시아의 그것은 타기할 만한 사회상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

36) Engels, Die Polendebatte in Frankfurt, MEW 5, p.334

37) 예컨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가 1차대전의 발발과 함께 이 전쟁을 독일의 ‘조국 수호 전쟁’이라 규정하고 전쟁예산을 승인했을 때, 그들의 전통적인 러시아 적개심이 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까치 1989), pp.290 이하를 참고할 것.

38) Engels, Der magyarische Kampf, MEW 6, p.172/176 및 Der demokratische Panlawismus, MEW 6, p.286

39)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전쟁에 직면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더 이상 전쟁의 혁명적 영향과 작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Wette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Wette, 앞의 책, p.84 참고

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결국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러시아의 승리를 희망하였던 것이다.⁴⁰⁾

그러나 그들은 국제 노동운동의 지도자로서 독일 노동자뿐만 아니라 프랑스 노동자에게도 동시에 행동지침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이전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민족적 '방어전쟁'(Verteidigungskrieg)의 개념을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다.⁴¹⁾ 특히 이 전쟁이 "왕조적"(dynastisch)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프랑스에 의해 먼저 선진포고로 행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일쪽 입장에서는 '방어전쟁'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 선언되었다.⁴²⁾

그러나 프랑스가 세당(Sedan)에서 패배하고 곧 이어서 공화국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수행하면서 알자스-로렌 합병의 아욕을 노골화하게 되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그들은 이 전쟁을 더 이상 방어전쟁으로 간주하지 않고 '정복전쟁'이라 규정하였다.⁴³⁾ 따라서 모든 노동운동 세력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철저히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촉구하였다.

이 전쟁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운동의 대규모 조직 통합을 조직적으로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쟁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이 반대로 영토확장과 민족적 억압의 아욕에 의해 이끌릴 때, 그들은 그것을 인민과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정복전쟁이라 규탄하였던 것이다.

40) Engels에 대한 Marx의 1870. 7. 20.자 서신, MEW 33, p.5; Paul 및 Laura Lafargue에 대한 Marx의 1870. 7. 28.자 서신, MEW 33, p.126; Marx에 대한 Engels의 1870. 8.15.자 서신, MEW 33, p.39를 참고할 것.

41) Wette, 앞의 책, p.84/86;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는 박호성, 앞의 책, pp.127-132를 참조할 것.

42) Marx, Ers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Franzosischen Krieg, MEW 17, p.5

43) Marx, Zwei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Franzosischen Krieg, MEW 17, p.271

16 사회과학연구

4. 후기 엥겔스의 반진론: 기술적 평화 추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결코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말하자면 전쟁을 도구시하는 사상가들이었다. 이처럼 도구적·수단적 관점에서 전쟁을 관찰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에 부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대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는 것이다.⁴⁸⁾

우리는 여기서 왜 말년의 엥겔스가 국가간의 전쟁이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엥겔스 자신의 몇몇 주요 언급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엥겔스는 1887년 세계대전의 위기와 전쟁 발발시의 예상가능한 참혹상을 대단히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프러시아-독일에게는 세계대전 이외의 다른 전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즉 지금까지 결코 예측하지 못한 규모와 격렬성을 지닌 세계대전만이 있게 될 것이다. 8백만에서 1천만에 이르는 병사들이 서로를 학살할 것이다. 30년 전쟁의 황폐함이 불과 3, 4년 안에 압축되어 전 대륙에 확산될 것이다. 기아·질병·참혹한 궁핍에 의해 야기될 군대와 민중의 도덕적 타락, 급기야는 총파산으로 끝날 무역·산업·신용제도에서의 구제할 길 없는 혼란, 수많은 왕관이 도로 위에 나뒹굴어도 그것을 짚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낡은 국가와 전통적 국가 지혜의 붕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고 누가 승리할 것인가

48) 앞서도 지적했듯이 폴란드의 민족해방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고 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가리켜, 예컨대 Bertram D. Wolfe는 '전쟁광'(warmongers)이라 낙인찍는다(Wolfe,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in Marx and Engels", in: The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17, 1958, p.406). 이러한 주장은 특히 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전쟁을 지지하는가 하는 그 뒷배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이라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전쟁이란 현실 정치의 다양한 모습에 따라 지극히 유연하게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3)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고, 패배한 프랑스에 오히려 프러시아보다 더 진보적인 정부형태인 공화국이 들어서자,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프랑스에서의 공화국 유지"를 본격적으로 옹호하게 되었다. 1871년 프랑스가 내전에 돌입하였을 때, 마르크스는 "억압자에 대항하는 피억압자의 전쟁은... 역사상 유일하게 합법적인 전쟁(rechtmaßiger Krieg)이다"라고 선언하였다.⁴⁴⁾ 이 경우 '억압자'는 바로 프랑스의 자본가 계급이었고 '피억압자'는 파리코민을 통해 대변되는 프랑스 인민이었다. 마르크스의 평가로는 "외부적 정복자(비스마르크, 필자 주)의 보호하에 수행되어지는 내전을 통해 혁명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모반"이 바로 프랑스 내전의 의미였다.⁴⁵⁾ 따라서 그러한 "지배계급의 모반"에 항거하는 피억압자의 전쟁(내전)이기 때문에 그 내전은 유일하게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는다.

이민족 정복자(비스마르크)의 직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민족 내부의 계급혁명을 억압하는 상황을 목격한 마르크스는 '민족전쟁'(Nationalkrieg)의 시대는 보불전쟁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단정하였다.⁴⁶⁾ "낡은 사회가 기록할 수 있었던 최대의 영웅적 번성은 민족전쟁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단지 계급투쟁을 지연시키려는 목적만을 지닌 순수한 통치 착란임이 밝혀졌다... 계급투쟁은 이 이상 더 민족적 복장 속에 스스로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여러 민족의 정부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서는 하나이다".⁴⁷⁾ 다른 말로 하면 예컨대 독일 통일을 초래한 보불전쟁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민족전쟁'은 과거에는 일정한 차원에서 진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파리로빈의 경우에도 나타나듯이 민족 내부의 계급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민족 외부의 지원이 허용되는 상황하에서는 혁명적 내전의 형태를 띠는 '계급전쟁'만이 역사적 진보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정당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불전쟁 이후의 모든 민족전쟁은 사실 계급전쟁적 속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보고 있는 것이다.

44) Marx,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MEW 17, p.358

45) 같은 글, p.361

46) Marx에 대한 Engels의 1870. 7.22.자 서신, MEW 33, p.8 및 Marx에 대한 Engels의 1870. 8. 15.자 서신, MEW 33, p.39 참고.

47) Marx, Bürgerkrieg, 앞의 책, p.361

마르크스주의와 폭력: 전쟁 및 혁명을 중심으로 / 17

에 대한 절대적 예측불가능. 절대적으로 확실한 결과는 전면적 궁핍과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조건의 형성이다.⁴⁹⁾

여기서 엥겔스는 세계대전의 비참한 결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전쟁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승리를 위한 기본조건을 만들 이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전쟁의 혁명적 영향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전쟁이 궁극적으로 노동자계급에게 혁명의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에 '군주와 정치가들'은 이 전쟁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셈이다. 엥겔스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평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그가 숨을 거두던 해인 1895년 엥겔스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전쟁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전쟁의 해악에 대해 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모든 주민이 수 백만을 헤아리는 군대속으로 편입되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화기와 탄환과 폭발물을 통해 전쟁 체계가 전면적으로 변혁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보나파르트적 전쟁 시대의 급격한 종말을 불러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대미문의 잔혹성과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종말로 점철될 세계대전 이외의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으로써 평화로운 산업발전을 보장하게 한다.⁵⁰⁾

엥겔스는 이처럼 전쟁 체계 및 기술의 전면적 변혁과 모든 것을 말살시켜 버릴 세계대전의 위기감을 오히려 평화를 보장해줄 강제 장치로서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다른 글 속에서 "평화는 어느 누구도 감히 전쟁할 각오를 갖지 않도록 만드는 무기 기술의 끝없는 혁신,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전쟁 형태로서 세계대전의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 덕분에 존속한다".⁵¹⁾

49) Engels, Einleitung zu S. Borkheims Broschüre "Zur Erinnerung für die deutschen Mordspatrioten, 1806-1807", MEW 21, p.350-1

50) Engels, Einleitung zu Marx,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MEW 22, p.517

51) Engels, Was nun?, MEW 22, p.9

셋째로,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대중정당으로의 발전⁵²⁾은 엥겔스의 평화지향적 자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는 '사회주의자 탄압법'(Sozialistengesetz)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 상당한 낙관을 지니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죽은 이후, 엥겔스는 독일 시민당의 계속적인 선거승리를 목격하면서 "합법성", 다시 말하면, "보통선거권의 성공적인 활용"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새로운 투쟁양식이 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이 합법성 속에서 독일 노동운동은 "탄력있는 근육과 불그스레한 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⁵³⁾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엥겔스는 "남은 형식의 폭동, 1848년 까지 도처에서 최후의 결정을 가했던 바리케이트 투쟁은 대단히 낡은 것이 되었다"고 자성적으로 슬회한다.⁵⁴⁾ 그리하여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독일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이 가능하다고 확신한 엥겔스에게는, 예측불가능한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에 노동자계급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평화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이해관계였던 것이다. 엥겔스는 단호히 주장한다. "평화는 약 10년 안에 독일 사회당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라고.⁵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략 세 개의 시대적 조건이 전쟁에 대한 엥겔스의 입장을 수정시켜준 계기로 작용하였다. 첫째,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세계대전의 위기, 둘째, 전쟁 기술 및 전쟁 체계의 전면적 변혁, 셋째,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꾸준한 성장과 합법적 선거를 통한 합법적 권력장악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다.

52) 독일 시민당(SPD)은 1881년에는 투표자의 6.1%, 1890년에는 19.7%, 1893년에는 23.3%, 1898년에는 27.2%를 획득하여 급격하게 대중정당으로 발전한다.

53) Engels, Einleitung zu "Klassenkämpfe," 앞의 책, MEW 22, p.513, 525

54) 같은 책, p.519; 이러한 엥겔스의 새로운 관점은 결코 그가 혁명적 관점에서 이탈한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H.J. Steinberg, "Die deutsche Sozialdemokratie nach dem Fall des Sozialistengesetzes", in: H.Mommsen(Hg.), Sozialdemokratie zwischen Klassenbewegung und Volkspartei(Frankfurt/M. 1974), p.55를 참고할 것.

55) Engels, Der Sozialismus in Deutschland, MEW 22, p.256

20 사회과학연구

략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단계는 1840년대 후반 「공산당 선언」 이전 시기로 이른바 '초기적', 'Young Marx'로 통칭되는 철학적 단계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혁명의 도덕적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혁명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존재가 최초로 포착되었으나 그것은 대체로 도덕적·윤리적·철학적 범주로서만 이해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저작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 토대가 잡히기 시작한 사적 유물론에 의거하여 혁명의 반 자본주의적 지향이 역사철학적으로 정당화되었다.

둘째 단계는 대체로 「공산당 선언」에서 시작하여 「자본론」에 이르는 중기의 정치경제학적 단계다. 이 시기에 오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부"(Anatomie)가 행해지면서 이윽고 사회주의 혁명의 '자연법칙적 필연성'이 강조된다. 예컨대 「공산당 선언」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이미 성숙했으므로 필요한 것은 주관적 조건의 완비, 즉 혁명적 조직의 건설과 그 공고화가 당면과제라 선언된다. 특히 1848년 혁명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는 확신을 강화시키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자본론」 단계에 이르러 되면 주관적 결단과 의지보다는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객관적 법칙성의 측면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하게 된다.

셋째 단계는 마지막 정치사회학적 단계다. 이 시기에는 그 이전 단계들에서 철학적·정치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되고 필연시되었던 사회주의 혁명의 여러 실천적 지침들이 현실정치적으로 분석되고 제시된다. 그와 아울러 혁명 이후 사회의 근본원리가 강령적 수준에서나마 처음으로 피력된다. 한편으로는 「파리 포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세계 최대의 사회주의 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던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전략, 전술 및 강령 등에 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현실 혁명운동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이 행해진다. 그러나 「고타강령 비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점차 개방화해가는 사회주의 운동의 조타를 바라보는 우울한 시선들이 틈틈히 나타나고 있다. 엥겔스에 의해 마지막으로

스주의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한다(Robert C.Tucker, The Marxian Revolutionary Idea, New York 1969, p.5)

물론 전쟁에 대한 이러한 엥겔스의 태도 변화는 그가 철저한 평화주의자로서 돌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기한 제반 역사적 상황의 변화가 엥겔스로 하여금 현실정책적 수단으로서 전쟁이 별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엥겔스는 새롭게 변모한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수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전쟁은 오히려 계급투쟁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장애물로 비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평화 속에서만이 노동운동의 지속적 발전과 그들에 의한 권력장악이 가능하다. 평화는 세계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군축의 필요성 또한 힘주어 역설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국제적 군축의 촉구는 물론 평화주의적 요청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새로운 상황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고 또 그대야만 한다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

III. 혁명론

1.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의 물질적 전제와 그 문제점: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론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혁명의 목표, 주체, 조직, 물질적 조건 문제 등과 결부된 복잡하고 미묘한 논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일단 사회주의 혁명의 물질적 전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과 그것이 지니는 문제점에 논의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세계의 해석"이 아니라 "세계의 변혁"을 평생의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혁명사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 이론체계의 본질에 속한다.⁵⁷⁾ 나는 이런 관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적 생애를 대

56) Engels, Kann Europa abrüsten?, MEW 22를 참고할 것.

57) 터키도 이런 취지에서 "혁명이론은 마르크스의 거의 모든 저작 속에 나타난다.... 따라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혁명은 마르크스 사상의 최상의 테마였으며 마르크스의 혁명 이념을 완전한 형태로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이론체계로서의 마르크

로 제시된 이른바 '혁명적 의회전술'도 실은 현실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독일 시민당에는 개량주의의 점진적 관철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⁸⁾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해 개진된 사회주의 혁명의 물질적 기본전제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충분한 성숙이다. 그것은 첫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착취의 근절과 분배의 평등을 보장하는 물질적 풍요의 담보조건이 된다. 따라서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은 사회주의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⁵⁹⁾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마르크스·엥겔스에게는 곧 자본주의적 모순이 또한 고도로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은 결국 사회주의적 종합(Synthese)으로 변증법적 진보를 생취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적 성숙은 동시에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즉 자본주의적 상부구조의 성숙을 동반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⁶⁰⁾ 바로 이러한 상부구조의 진화는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모순심화를

58) 이에 관해서는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까치 1989, 특히 334-343 쪽 참고.

59) 마르크스/엥겔스는 「Die deutsche Ideologie」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역사의 모든 갈등은 생산력과 교류형태 사이의 모순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 모순이 어떤 국가에서 충돌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 국가 자체 내에서 첨예화할 필요성은 없다. 확대된 국제적 교류로 인하여 야기된 산업 선진국과의 경쟁관계는 저개발 산업국에도 비슷한 모순을 야기시키는 데 충분하다"(MEW 3, S.73; 강조는 필자). 특히 아로슬라브스키(Jan Jaroslawski)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이 테제를 레닌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가 훗날 제시한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후진지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가능성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하나의 놀라운 테제"가 이미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해 제시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Theorie der sozialistischen Revolution. Von Marx bis Lenin, Hamburg 1973, S.44). 그러나 이 주장은 그 간파력이 뛰어난지 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그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의의가, 러시아는 결코 선진 산업국과 "경쟁관계"에 있을만큼의 자본주의적 경제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고 따라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모순이 러시아에서의 '반 자본주의 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으로 기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그들은 봉건 전제국가인 러시아에서 오히려 농업혁명을 기대하고 있었다(예컨대 마르크스에게 보낸 엥겔스의 1851년 5월 23일자 서신, MEW 27, S.266-7을 볼 것).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곳(최소한 독일 정도의 수준)에서만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들의 기본 신조였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거나 그 예봉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셋째, 마르크스·엔겔스는 자본주의의 국제적 팽창으로 말미암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또한 민족적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동시에” 진행될 혁명이었다.

마르크스·엔겔스는 이러한 혁명원칙을 평생 고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계급모순이 최고도로 성숙해 있다고 믿은 영국을 사회주의 혁명의 최대 가능성지로 간주하였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영국은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필수적인 모든 물질적 전제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영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혁명은 전 세계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61).

그러나 마르크스·엔겔스가 기대하였던 영국에서의 사회 혁명은 결코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였다. 예컨대 1851년 중국에서 태평천국 봉기가 발발하였을 때(62), 1867년 아일랜드에서 민족혁명 운동이 발생하였을 때(63), 그들은 이러한 지각변동이 영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직접적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고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안타까울 정도의 소망은 전혀 충족되지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혁명이 영국에서 폭발할 것이다, 또

60) 예컨대 보비오는 이런 측면을 보다 명쾌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엔겔스는 우선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누가’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에 더욱 본질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의 개념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탓에 모든 정부 및 국가 형태를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엔겔스 그리고 레닌도 마찬가지로 정치과정의 제반 제도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주체 문제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orberto Bobbio, Which Socialism?: Marxism, Socialism and Democracy(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특히 p.61을 볼 것.

61) Marx, Der Generalrat an den Federalrat der romanischen Schweiz, MEW 16, S.386 및 Konfidentielle Mitteilung, MEW 16, S.415 참조.

62) Marx, Die Revolution in China und in Europa, MEW 9, S.98/100 참조.

63) Marx, Der Generalrat, 앞의 글, S.387-89 또는 Konfidentiel: Mitteilung, 앞의 글, S.416f 및 Marx an Ludwig Kugelmann, 29.November 1864, MEW 32, S.638 등 참조.

24 사회과학연구

이 진술은 명백히 “근대적 생산력과 부르주아적 생산형태”의 충돌을 “일반적 호황기”에는 불가능한, 말하자면 특정 시기, 즉 경제위기 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물론 자본주의적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긴 하였지만, 만일 자본주의가 현실적으로 위기를 계속 이겨낼 수 있는 국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되거나 또는 거의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우리는 이 글 속에서 유추해낼 수 있다. 어쨌든 이 당시 영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가능성은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해 일단 유보된 셈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감정은 점차 안정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인다. 엔겔스는 이번에는 ‘심지어’ “부르주아적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경멸적인 용어를 들이대면서까지 영국을 유박지르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보낸 1858년의 한 편지 속에서 그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을 위해 진보적 부르주아 진영과 동맹을 체결한 영국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부르주아지화’(Verbürgerlichung)를 통박하고 있다. 엔겔스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부르주아적인 국가”, 즉 영국에서, “부르주아적 프롤레타리아트”를 출현하는 것은 그리 이상스러운 게 없다고 인정거리면서 “전 세계를 착취하는 한 민족에게 그것은 물론 어느 정도는 정당화 된다”는 말을 자학적으로 내뱉고 있다(67). 그러나 이 ‘부르주아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프롤레타리아적 부르주아지’로 상승하고, 다시 그때 부르주아지로의 변신을 거쳐 중국에는 완전한 부르주아지로 안착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개연성에 대한 예감이 엔겔스를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마르크스가 죽기 직전 이번에는 카우츠키에게 보낸 서신에서 엔겔스는 드디어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이곳에는 정말 어떠한 노동자 정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노동자들도 영국의 세계시장 및 식민지 독립 덕에 더불어 함께 먹고 살고 있다”(68). 그는 식민정책에 대한 영국 노동자의 태도가 부르주아지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하면서 이렇게 씩씩히 배신감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엔겔스는 거의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67) Engels an Marx, 7.Okt.1858, MEW 29, S.358

68) Engels an Kautsky, 12.Sep.1882, MEW 35, S.357

는 해야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유물사관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와 유사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국이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관용해준 유일한 나라였음에도 그러한 나라의 현실을 뒤집어 엮는 혁명에 유별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공공연한 전복활동조차 ‘닉네히’ 포용할 수 있었던 영국 사회의 왕성한 소화능력 자체가 실은 혁명 가능성까지도 너끈히 용해시켜버릴 수 있었던 저력은 아니었을까(64).

이미 1850년 마르크스·엔겔스는 최초로 ‘노동귀족’(Aristokratie der Arbeiter)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가며 당시의 한심한 영국적 상황에 대해 상심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이미 뼈대부르주아지와 연루된 개량주의적 정향의 노동귀족과, “진실로 프롤레타리아적 상황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 대중으로 분열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다(65). 또한 같은 글 속에서 그들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언급을 하고 있다. 불과 3년여 전 “공산당 선언”을 쓸 무렵만 하더라도 그들은 자본주의가 이미 혁명적 종말에 봉착해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적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부르주아 사회의 생산력이, 부르주아적 상황 내부에서 전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왕성한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는 일반적 호황기(allgemeine Prosperität)에 는 참다운 혁명이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혁명은 단지 근대적 생산력과 부르주아적 생산형태, 이 두 요소들이 서로 모순에 빠지는 그러한 시기에만 가능하다... 새로운 혁명은 단지 새로운 위기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혁명은 이 위기와 마찬가지로 역시 확실하다(66).

64) 우리는 영국이 가장 장구한 자유주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국은 사실상 마르크스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자유주의의 거대한 파급력을 여실히 과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성된 페이비언 사회주의도 마르크스보다는 오히려 J.S.밀의 이론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발달과 마르크스주의의 확산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예시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65) Marx/Engels, Revue, Mai bis Oktober 1850, MEW 7, S.445

66) 같은 글, S.440

마르크스주의와 폭력: 전쟁 및 혁명을 중심으로 / 25

그러나 엔겔스는 결코 최초의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르크스가 죽고 난 후에도 영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음을 끈기있게 설파하였던 것이다.

엔겔스는 「1845년과 1885년의 영국」(69)이라는 글 속에서 그 이유를 세계시장에서의 영국의 산업독점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데서 찾았다. 그는 원래 1847년의 무역위기와 아일랜드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의 혁명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848년의 프랑스 혁명이 영국의 부르주아지를 결과적으로 구원해준 것으로 인식했다. 엔겔스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 구호들이 영국의 뼈대 부르주아지들을 경악시켰고, 이들의 냉담과 경각심이 결국 차티스트 운동의 조직적 붕괴까지도 야기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한편 1831년의 의회개혁과 1846년의 곡물관세 폐지로 인해 산업자본가의 지배력이 확립되었고, 그것은 이윽고 영국을 농업적 “위성”에 둘러싸인 거대한 산업중심지적 “태양”으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차티스트의 몰락과 자유무역에 기초한 경기황성화는 영국의 노동자들을 기약가들에 의해 이끌리는 “대 자유주의적 정당의 꼬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노동자계급의 도용 없이는 그들의 정치적·사회적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영국의 자본가계급은 심지어 한때 그들을 격분케 하였던 차티스트의 주요 요구들을 자신들의 개혁조치로 현실화시켰다. 예컨대 1867년과 1884년의 의회개혁은 그 반증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1850-1870년간의 엄청난 생산증대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상황 역시 현저하게 변질시켰다. 특히 노동조합(Trade Union) - 엔겔스의 표현을 빌리면 “노동자 계급 내부의 노동귀족”(Aristokratie in der Arbeiterklasse) - 은 자본가계급의 충실한 파트너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선, 이미 1850년에 언급했던 ‘노동귀족’의 존재가 40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오히려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재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오랜기간을 두고 확실하게 기반을 닦아온 노동귀족이 과연 사회주의 혁명에 어떠한 지세를 취할 것인가? 과연 이들이 혁명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엥겔스는 이 문제를 그의 뒤를 따라오는 레닌과 대단히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산업독점을 엥겔스는 영국의 기존 사회체제 유지의 관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증대하는 영국의 생산력은, 바로 이' 독점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영국의 노동자계급 또한 이 독점으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특혜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 이득은 지극히 불평등하게 노동자들 사이에 분배된다. 특권적 소수(즉 노동귀족)가 대부분의 몫을 쟁취하지만 대다수 노동자들도 의당 제 몫을 잊지 않는다. 엥겔스는 바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로버트 오웬(Robert Owen) 이후 왜 영국에는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낸다.

그러나 엥겔스는 다시 한번 영국 혁명의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그에 의하면 거의 100여년 동안이나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시장에서의 산업독점은 불가항력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특히 미국의 세계시장 장식으로 인해 영국 자본주의는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자본주의는 정체를 모른다. 정체는 곧 파멸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복잡하고 있던 시장의 위축은 곧 영국 자본주의의 '정체와 몰락을 의미한다. 엥겔스는 단호히 선언한다. 영국은 이제 "민족의 산산조각이나, 아니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파멸이나"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고. 그뿐 아니다.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이 파괴됨으로써 영국의 노동자계급 또한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머지않아 "전면적으로 -지도적인 특권 소수층도 포함하여- 외국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엥겔스는 바로 이 가능성이야말로 영국이 다시 사회주의 혁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필연적 사유라 갈파한다. 이렇게 영국의 사회주의적 부활은 또 다시 필연성의 세계 속으로 편입하게 된다. 이것은 1885년의 일이다.

우리는 또 의문에 부딪힌다.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영국의 시장 독점은 세찬 경쟁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영국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사회주의 혁명만이 유일한 탈출구일 수밖에 없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만일 그러한 세계시장에서의 산업독점이, 안화된 형태로나마 예컨대 미국같은 나라로 이전되거나 몇몇 산업선진국들이 그 독점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Eurocentrismus)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질서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혁명은 지금 결과적으로 인민 스스로에 의해 거부당하는 '글욕'을 맞보고 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엥겔스의 소신과는 달리 왜 당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좌절되었을까?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은 왜 왜곡되고 굴절된 형태로 자본주의적 변방(러시아)으로 추방당하지 않았던 안 되었던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⁷⁰⁾

첫째, 자본주의의 발달은 점차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를 완화·회색시킬 수 있는 상부구조의 성숙을 동반하였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주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지배력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임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그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도 일정한 정치적 양보를 통해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타협적 제도창치임도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말하자면 중대하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용담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회적 불만은 기존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순치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⁷¹⁾ 노동자들의 요구가 합법적·민주적으로 개진될 수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

⁷⁰⁾ Nachwort(1894) zu 'Sozialen aus Russland'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서유럽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승리하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로 전환되고 나서... 자본주의 경제가 그 고향에서 그리고 그것이 꽃피는 나라들에서 극부되고 난 후에만... 후진 국가들은 단지 이 단속된 발전과정을 시뮬할 수 있다. 그럴 때라야만 역시 확실한 성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특히 전(前) 자본주의적 단계에 처해 있는 나라들에게 다 해당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 주민의 일부가 이미 자본주의적 발전의 지적 결과를 확보하였고, 혁명기에는 여기서도 서유럽과 거의 동시에 사회적 변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 그것이 비교적 가장 용이할 것이다"(MEW 22, S.428f).

⁷²⁾ 대단히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난해한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일단 일반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⁷³⁾ 이미 1872년 마르크스는 암스테르담에서 행한 어느 연설에서 사회주의의 실현 방법과 관련하여 상당히 흥미있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들은 여러 상이한 나라들의 제도와 풍습 그리고 전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미국, 영국 그리고 ... 또 네

은 현상 - 말하자면 엥겔스의 지적처럼 노동귀족의 출현과 노동자계급의 개량화 등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연시키는 -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⁷⁰⁾ 다른 말로 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부르주아지화' 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연·왜곡 또는 봉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경향들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오히려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영국이 자본주의적 국제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국민경제적 난관과 위기에 부딪칠 때,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영국의 자본가계급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같은 이민족 자본주의 열강을 자신의 우선적 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가? 왜냐하면 다양한 권력적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의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적 국제 경쟁에서 보듯이, 그러한 민족주의적 적개심을 손쉽게 고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흔들리는 자신의 내부적 지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영국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자신의 민족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그들의 자본가들과 거족적으로 단합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지는 않았는가?

2.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의 좌절과 레닌주의

마르크스·엥겔스의 혁명적 예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의문들이 실은 지금까지의 역사발전이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의 물질적 전제조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충족시켰던 영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냉정하게 관찰할 때 그 가능성은 거의 회박해 보인다. 그러한 혁명은 오히려, 마르크스·엥겔스가 그 폭발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궁극적 성공 가능성을 서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원천적으로 종속시켰던, 러시아에서 터져나왔다⁷¹⁾. 그러나 러시아는 당시 마르크스·엥겔스의 유럽중심주의

⁷⁰⁾ 그러나 마르크스/엥겔스는 이러한 영국적 상황을 단지 "비전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H.-C.Schroder, Sozialistische Imperialismusdeutung, Göttingen 1973, S.63-6, 특히 S.65를 참고할 것.

⁷¹⁾ 예컨대 러시아 혁명에 관한 그의 마지막 저작이 강력하고 있는

던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여러 나라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가 철저히 암살당하고 있던 러시아에서 반 자본주의 혁명이 성공하였음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둘째, 자본주의의 성숙은 노동자들의 물질적 생활을 상당할 정도로 개선시켰다. 비+북 공범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이루어내지 못하였지만 실질임금의 꾸준한 인상,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 사회보장의 확대 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반감보다는 오히려 신뢰감을 부추기도록 한 측면이 적지 않다. 마르크스·엥겔스가 개탄해마지 않았던 노동자계급의 '부르주아지화'도 바로 이러한 물질적 생활조건 향상과 따른 노동자 의식의 변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 결과 체제부정적 정치투쟁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지향하는 체제순응적 경제투쟁이 더욱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Revisionismus)는 바로 이러한 현실 변화의 이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장 앞섰던 서유럽에서 이러한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가 노동운동의 주류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사의 아이러니에 불과한 것일까?

셋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달은 사회의 분화 및 다원화를 초래하였음도 사실이다.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절대적 지위'가 사회적으로 상대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농민계급, 소시민계급, 신 중산계급 등과 같은 여타 다른 사회계급과의 연대가 강조되었다⁷²⁾. 다른 한편 노동운동의 발달은 이윤과 노동

멜란드... 같은 나라들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Marx, Rede über den Haager Kongress, MEW 18, S.160: 강조는 필자). 유감스럽게도 마르크스는 여기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취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속성이 과연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공고한 지역이라는 점을 마르크스 역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⁷⁴⁾ 레보르스키 교수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의회선거를 통해 권력장악과 사회주의의 실현을 시도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비프롤레타리아 계층 및 이해관계를 포섭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량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실증력있게 역설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Adam Przeworski, Social Democracy as a Historical Phenomenon, in: New Left Review 122(1980) 및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7-46을 볼 것.; 그 번역본은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박호성 편역,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이론과 현실,

운동 조직의 판료화도 야기시켰다. 기업의 집중 현상은 산업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의 수적 증대까지 불러왔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상당 부분은 노동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입, 더 확실한 직업 보장, 더 나은 작업 환경 등을 통해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는 편이었다. 노동운동의 여러 다양한 조직들에 고용된 사무직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마디로 노동운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으로부터"도 자신들의 삶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⁷⁵⁾. 예컨대 독일의 경우 대부분 '비프롤레타리아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이 사무직원들이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판료화와 개량화에 적극 공헌한 셈이었다⁷⁶⁾. 이런 요인들은 서로 함께 어울리어 자연히 노동자계급 내부로 비 프롤레타리아적 요소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폭넓은 통로를 마련해주었다.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이 약화되거나 희석될 수밖에 없었음은 자명한 이치였다.

넷째, 자본주의의 발전은 19세기 말 무렵 제국주의로 비화하였다. 이 제국주의적 무한경쟁에서는 특히 민족주의가 그 이데올로기적 자양분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위기의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평화시에는 침묵해 있다가 일단 유사사기가 되면 거의 부분별할 정도로 터져나온다. 민족주의는 고단위의 정서적 폭발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효율적인 대중동원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 이러한 민족의식과는 달리 계급의식은 대체로 논리적 추리와 합리적 타산에 의존한다. 결국 자본주의적 충돌이 심화되고 민족적 위기가 고양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계급의식의 호소력은 결정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다수의 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이 그때까지 주문처럼 읊어오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팽개치고 자신이 원천적 타도의 대상으로 규탄해마지 않던 제국주의적 '조국의 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것은 그 상징적 실증 사례다. 제국주의는 이처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민족의식을 동원함으로써 노동자와 자본가의 내부적 계급전쟁을 중지시키고 이른바 '성중평화'(Burgfrieden)를 체결토록 종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계급갈등의 파열은 차

창람 1991, p.99-152에 수록되어 있음.

75) Wolfgang Abendroth, Sozialgeschichte der europäischen Arbeiterbewegung, 10.Aufl., Frankfurt/M. 1975, S.71

76) Georg Fulberth, Zur Genese des Revisionismus in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vor 1914, in: Das Argument 13, 1971, H.1/2 참조.

어난다 하더라도 그 최후의 심판자, 최후의 주재자는 곧 이 서유럽의 프롤레타리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명적 '향일성'(tropism)은 사실 마르크스·엔겔스의 유물사관에 기인한다.

예컨대 러시아에서의 혁명 가능성을 개진할 때도 마르크스·엔겔스는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관점으로 회귀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특정적인 상황 하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지를 대신해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제반 시민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투쟁은 노동자 자신의 "생존요소를 위한 투쟁이며 호흡에 필수불가결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⁷⁷⁾. 이렇게 볼 때, '생존요소와 호흡에 필수불가결한 공기', 즉 사회주의 운동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진제조건도 확보하지 못한 짜르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엔겔스는 과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⁷⁸⁾

그렇다면 러시아 혁명은 마르크스주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나아가 마르크스주의는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 붕괴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러시아 혁명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돌연변이였다.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풍부

77) Engels, Die Preussische Militärfrage und die deutsche Arbeiterpartei, MEW 16, S.76-77

78) 마르크스/엔겔스가 자본주의의 성숙 및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근본 전제로 간주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러시아에서 오히려 부르주아 혁명의 도래를 필연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1860년에 발표한 'Heinrich Vogt'에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는 근대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해방을 위한 물질적 전제적 창출을 위한 근본 조건이다...영국이 동참하지 않는 어떠한 프롤레타리아 운동도 물건 속의 폭풍에 지나지 않는다...대륙적 의미에서의 귀족이 그 지배로부터 축출당해야만 하는 나라들에서는(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곳, 필자 주), 내 생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 단계, 즉 전국적 차원에서의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를 결하고 있다"(MEW 14, S.449ff)고 말하고 있다. 엔겔스 역시 예컨대 자수리치(Sassulitsch)에게 보낸 1885년 4월 23일의 서신에서 "러시아 상황에 대해 내가 아는 것 또는 안다고 믿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는 그의 1789년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도록 만들었다...그러한 곳에서 1789년이 일단 시작되면 1793년의 도래는 잠시다"라고 쓰고 있다(MEW 36, S.303ff).

단되었던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당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주의·혁명 좌절 이유로서 우선 자본주의적 상부구조의 포용력, 그리고 물질생활의 개선, 사회적 분화 및 노동운동의 판료화 등으로 인한 프롤레타리아적 계급의식의 마모, 계급의식을 압도하는 민족의식의 우월성 등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이 요인들은 하나같이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해 부차적, 비본질적 요소로 경시당한 것들이다. 그렇지 만 그들도 간헐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혁명을 저해하고 있음을 묵과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던 바와 같이 영국 혁명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는 적지않은 파행과 굴곡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현실변화에 부응하는 이른바 새로운 점검에는 등한하였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적으로' 정초된 자신들의 공산주의적 이상과 현존 부르주아 사회 사이에 내재하는 간극을 절대적이고 화해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가 조속히 제거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급박한 희망과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비본질적' 요인들이 실은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동요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의 숙명적 딜렘머가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을 전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숙한 발전은 거꾸로 사회주의 혁명의 저해 요인들을 생성시킨다. 바로 이 순환모순에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은 좌초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자본주의적 중심부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능성이 거의 쇠잔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들 중의 주요한 부분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엔겔스의 혁명관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은 의당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날 보편혁명이 되리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서유럽과 미국이야말로 역사적 진보의 담당주체로서 '태양'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았으며, 반면에 그 이외의 지역은 객체적 '위성'으로서 그러한 태양에 충실히 봉사하고 복무해야 하는 피동적 임무만을 부여받았다.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도 실은 '프롤레타리아 유권주의'에 다름아니었다. 왜냐하면 세계 다른 지역에서 혁명적 분규가 일

하게 발전하지도 못했고 시민적 자유의 세례도 전혀 받지 못한 반(半)봉건적 불모지, 세계대전의 포연에 피폐할대로 피폐한 경제적 황무지, 그러한 곳에 사회주의가 강제 이식된 셈이었다. 또한 혁명정권은 내부적으로는 반혁명 세력의 완강한 저항과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집중포화에 알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롤레타리아트의,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사회체제가 생성될 수 있었겠는가. 결국 당과 국가에 의한 사회의 전면적이고 일사불란한 강압 통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결과적으로, 마치 프랑스 혁명에 의해 특권계급의 국가가 국민의 이름을 빌린 자본가계급의 국가로 변모했듯이, 이번에는 그것이 러시아 혁명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을 빌린 당(관료)의 국가로 변질되었다. 레닌은 비록 그 혁명을 성공시켰으나 거꾸로 바로 그 혁명에 의해 포박당한 것이다.

레닌주의는 한마디로 혁명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그리고 자본주의적 요소와 봉건적 요소가 공존하는 다민족적 전제국가를 겨냥한 혁명 이데올로기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레닌주의는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 반(反)봉건적 혁명강령, 강압적·권위주의적 산업화 전략의 정당화 논리체계, 거기다가 사회주의적 근본 구상까지 '한꺼번에' 포괄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순적 저항 및 지배 이데올로기로 군림한다⁷⁹⁾. 따라서 본질적으로, 시민혁명을 완료한 선진 자본주의 지역을 겨냥하였던 마르크스·엔겔스의 혁명이론은 심각하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⁸⁰⁾.

물론 레닌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 무계급사회의 지향 등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적 핵심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해 무시당하거나 소홀히 취급당한 당 이론, 농민 문제, 민족 문제, 국가 이론, 제국주의론 등을 새로운

79) Peter von Oertzen, Eine marxistische Grundlegung des Demokratismus. Thesen und Hypothesen zu einer offenen Frage, in: Thomas Meyer(Hg.), Demokratischer Sozialismus - Geistige Grundlage und Wege in die Zukunft, Wien 1980, S.88 참조

80) 레닌주의의 본질 및 마르크스주의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박호성, 사회주의의 건설 및 지양의 이념적 논리체계: 소련 및 동유럽을 중심으로,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 창간호(1992)를 볼 것.

각도,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수정하거나 재조명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혁명 이데올로기이지만 레닌주의는 동시에 혁명적 권력쟁탈을 완료하기 위한 체제유지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속명적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레닌주의는 앞서도 언급한, 실지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단순히 피동적 통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비민주적 1당 독재체제의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볼셰비키 당 이론은 그 전형적인 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무엇보다 레닌으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를 러시아화 하도록 강요한 러시아적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사회주의의 전제가 주어지지 못한 곳에서 사회주의를 창출하려는 강압적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형적인 역사 현실을 창조해내고 말았던 것이다. 엥겔스는 그의 「독일 농민전쟁」에서 이 문제와 연관지을 수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한 극단적 당파(extreme Partei)의 지도자가 봉착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운동(Bewegung)이 아직, 그가 대변하는 계급의 지배와 이 계급의 지배가 요구하는 조처들의 수행에 필요할만큼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통치(Regierung)를 떠맡도록 강요당할 때이다. 그가 의당 해야만(kann) 하는 것은 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계급들의 모순의 심도에. 그리고 계급모순의 일상적 발전 정도가 근거하는 제반 물질적 생존조건과 생산 및 교류관계의 발전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가 할 수밖에 없는(soll) 것은 그리고 그의 당파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도 또 계급투쟁 및 그 조건들의 발전 정도에도 달려 있지 않다; 그는 사실상, 적대적 사회계급의 일시적 위상이나 생산 및 교류관계의 일시적이고 다소 우연적인 수준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운동의 일관적 결과들에 대한 그의 다소간의 통찰력에서 비롯하는, 그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교리와 요구들에 묶여 있다. 그래서 그는 필연적으로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그가 의당 해야만(kann) 하는 것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 그의 제반 원칙 및 자신이 속해 있는 당파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것이다; 반면에 그가 할 수밖에 없는(soll) 것은 이행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 당파나 자신의 계급이 아니라, 참된 운동에 의해 지

36 사회과학연구

략한 소련 및 동유럽 공산국가를 지배했던 사회적 모순을 실감케 하는 이러한 예언적 통찰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다.

더 이상 특권적 계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정부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을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관리하는 일에만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부는 생산과 부의 정당한 분배 그리고 토지의 경작, 공장, 공장의 건설과 유지, 상업의 조직과 지도, 마지막으로 유일한 은행가인 국가에 의한 생산자본의 활용을 자신의 수중에 집중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지식과 '넘칠 정도의 지력을 소유한 두뇌들'을 이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 지성(scientific intelligence)의 지배, 요컨대 가장 귀족적이고 전체적이고 오만하고 방야무인한 지배를 생성시킬 것이다. 새로운 계급, 진짜는 가짜는 과학자와 학자의 새로운 위계질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지식의 이름으로 지배하는 소수와 무지한 다수로 분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지한 다수 대중은 고통 속에 빠질 것이다⁸⁰.

바쿠닌의 이러한 비판은 국가 일반에 대한 그의 원천권 부정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지만 훗날 러시아의 역사적 체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록 pp.283-289(인용은 p.287) 및 Richard H.Hudelson,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Westview press, Boulder/San Francisco/Oxford 1993), pp.44-47도 참조

80) Marxism, Freedom and the State, trans.and ed. K.J.Kemafick(London:Freedom Press 1984), P.38, Joseph V.Fernia, Marxism and Democracy(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146-47에서 인용: 이 인용문에서 '과학적 지성인', '지식의 이름으로 지배하는 소수' 등의 표현을 사회주의권을 지배했던 '전위당'으로 바꾸어 놓으면 곧 바로 현실감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미 1880년대에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초래할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예컨대 알베르트 샤프레(Albert Schaffle)와 아돌프 바그너(Adolph Wagner)는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적 동기로서의 이윤추구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 통제, 노동세계에서의 제반 자유권의 제거 그리고 개인적 욕구의 억압 등 위험한 집단주의적 중앙화 경향을 지니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chaffle, Die Aussichtslosigkeit der Socialdemokratie, Tubingen 1885, S.7,24f 및 Wagner, Grundlegung der politischen Okonomie, 1.Teil, 2.Halbband, Leipzig, 1892, S.58ff를 참고할 것.

당하는 것이다. 그는 운동의 이해관계 자체 속에서 그에게 이질적인 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수행해야 하고, 자신의 계급에게는 그 이질적인 계급의 이해관계야말로 바로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라는 구호와 약속과 격려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해곡된 상황에 빠지는 자는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패배한다. 최근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체험하였다: 우리는 단지, 비록 그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단히 저급한 발전단계를 대표하긴 했지만 프랑스 마지 막 임시정부 시기의 프롤레타리아트 대변자들(Louis Blanc과 Albert(Alexandre Martin), 필자 주)의 상황을 회상하는 것으로 족하다⁸¹.

여기서 엥겔스는 토마스 뮌저(Thomas Munzer)의 실패를 본보기로 들어 물질적 전체의 총족과 객관적 상황의 성숙이 사회혁명에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재차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직면하여 마르크스·엥겔스는 면죄부를 발부받아도 좋은가?

우리는 이 기회에 국가 문제를 가운데 놓고 마르크스와 무정부주의자 바쿠닌(Bakunin)이 벌였던 대단히 교훈적인 논쟁을 회상해볼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마르크스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의 국가는 단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이었다. 레닌 역시 이 원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바쿠닌은 이 구상을 근본적으로 배척한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 단지 "소규모 특권적 소수에 의한 인민대중의 지배"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일단 그것이 수립되면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 단정짓는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는 것은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해관계에 맞서 소수 특권계급의 이해관계 수호에만 집착할 기구라는 말이다⁸². 1872년 바쿠닌은 이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관련지어 물

81) Engels, Der deutsche Bauernkrieg, MEW 7, S.400-401: 나는 여기서 전체 문맥과 엥겔스의 숨은 뜻을 고려하여 'kann'을 '의당 해야만 하는'으로, 그리고 'soll'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 각 의역하였다. 원래 'kann'은 현실적인 가능성일, 'sollen'은 미래의 당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엥겔스는 이 인용문에서 각 각의 어휘를 상반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82) 덧붙여 바쿠닌은 이렇 기능성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는 "인간본성에 대해 지독히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일 것이라 단언한다. G.P.Maximoff, The Political Philosophy of Bakunin: Scientific Anarchism(The Free Press, New York 1953),

이상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마르크스·엥겔스가 의미하였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다수에 의한 非 또는 反 프롤레타리아트 소수에 대한 독재였다. 하지만 레닌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독재에 대해 지나친 낙관적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 자체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앙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 법치주의, 권력분립, 대의제도, 보통선거 등 제반 민주주의적 절차 및 제도를 어떻게 사회주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다수의 명분만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하기만 하면 항상 외형적 정통성을 손쉽게 획득하게 되는 급진적 또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운명에서 보듯이, 소수지배의 정당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언제나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러시아에서 입증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바쿠닌의 주장은 예언적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스탈린 치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원천적 성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창출에 필요한 조건들을 겨우 마련하기 시작하였다⁸⁴.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낸 것이다.

IV. 맺는 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논리에 따르면 계급지배가 존속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평화가 확립될 수 없다. "계급과 계급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질서 속에서만이 '사회적 진화'는 '정치적 혁명'이기를 중단한다"⁸⁵)는 마르크스의 인명에서도 암시받을 수 있듯이, 무계급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사회는 갈등과 분규

84) David Lane,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Class, Status and Power under State Socialism(London:George Allen & Unwin 1982, p.24 참조
85) Marx, Das Elend der Philosophie, MEW 4, p.182

와 혁명,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종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는 결국 무계급사회적 현상인 셈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쟁을 크게 보아 민족 내부의 전쟁으로서 계급투쟁과 국가간의 전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이란 민족 내부와 국제적인 범주에서의 계급간의 무력적 대결로 개념화된다. 근본적으로 계급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전쟁은 계급혁명의 기준에서 그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난다. 말하자면 사회혁명을 촉진시킴으로써 역사발전의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전쟁은 항상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전쟁이란 궁극적으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란, 즉 계급사회에서의 평화란 전쟁과 전쟁 사이의 잠정적 휴지(休止)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에 적극적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적 무계급사회(86)에서의 평화는 자본과 노동의 상호갈등이 불식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최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계급지배를 가능케 하는 노동분화(Arbeitsteilung)가 극복됨으로써 결국 민족 내부의 계급적 갈등이 사라지고, 그것이 마침내 민족 상호간의 적대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 자체의 소멸까지도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과 폭력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계급과 민족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을 역사발전의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 폭력과 폭력적 혁명을 역사발전의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터져나오리라 기대하였던 사회주의 혁명은 오히려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가 거의 마련되지 못한 자본주의적 후진국가에서 터져나왔다. 이후의 역사적 발전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적 예측과는 정반대로,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환수고대하였던 영국의 경우가 이러한 사실을 웅변적으로

86)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미래사회에 관한 이론적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Thilo Ramm, "Die künftige Gesellschaftsordnung nach der Theorie von Marx und Engels", in: Iring Fetscher (Hg.), Marxismusstudien 2 (Tubingen, 1957), p.77-119 을 참고할 것.

博士學位 請求論文

마르크스가 본 전쟁과 평화

- 'Gewalt'의 이해를 중심으로 -

1996年 6月 日

崇實大學校 大學院

哲學科

金 承 國

입증하고 있다.

전쟁과 혁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자본주의적 착취와 모순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폭력에서 해방되기 위한 폭력적 수단이었다. 그들이 이러한 방법론적 폭력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도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의 유토피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적 미래사회의 구체적 모습에 관해 본격적인 연구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역사적 존재로부터가 아니라 상상과 관념의 힘을 동원하여 묘사할 수밖에 없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사실 그들의 역사적 서술방법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일지 모른다. 아마도 이러한 한계 때문에 그들은 무계급사회의 참다운 본질과 특성에 관해 별다른 연구 결과를 남겨놓지 못한 것 같다. 사실상 그들은 모순과 갈등을 역사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함으로써 '지옥'의 참상과 '천국'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는 명쾌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천국' 자체의 모습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론은 폭력만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폭력은 폭력을 파괴하기 위한 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博士學位 請求論文

마르크스가 본 전쟁과 평화

- 'Gewalt'의 이해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李 三 悅

1996年 6月 日

崇實大學校 大學院

哲學科

金 承 國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